

금융 · 보험세제연구

: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2016. 5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머 리 말

금융은 과거 제조업을 뒷받침하던 역할을 뛰어넘어 지식산업의 토양을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 스스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그 역할이 커졌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역할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과 주고받는 영향 또한 막대해졌다.

따라서 금융세제가 금융시장과 시장참여자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종의 규칙을 적용하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금융세제의 설계가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 역시 합리적인 세제의 중요성과 필요를 잘 알고 있어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합리적인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 거의 해마다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있을 정도로 세제는 우리 사회가 작동할 수 있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권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금융 및 보험을 아우르는 금융세제 전반에 관한 연구가 다소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세제 전반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금융업권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집합투자기
구, 보험 그리고 연금의 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의 금융세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 금융세제, 금융산업 나아가 우리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6년 5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II. 금융소득과 과세 / 16

1.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 16

2. 금융상품과 과세 / 18

III.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세제 / 30

1. 현황 / 30

2. 이슈 및 주요쟁점 / 35

3. 해외의 집합투자기구 세제 / 41

4. 소결 / 54

IV. 보험상품과 세제 / 57

1. 현황 / 57

2. 이슈 및 문제점 / 66

3. 해외의 보험세제 / 67

4. 소결 / 73

V. 연금과 세제 / 75

1. 현황 / 75

2. 이슈 및 문제점 / 81

3. 해외의 연금세제 / 85

4. 소결 / 114

VI. 결론 / 116

| 참고문헌 | / 119

■ 표 차례

- 〈표 II-1〉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 24
- 〈표 II-2〉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27
- 〈표 III-1〉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장주식 과세제외의 예 / 36
- 〈표 III-2〉 집합투자기구의 과세－펀드 간 손익통산의 문제 / 36
- 〈표 III-3〉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연도별 손익통산의 문제 / 37
- 〈표 III-4〉 영국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 42
- 〈표 III-5〉 일본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 51
- 〈표 III-6〉 금융소득 과세일체화(2009년) 이후 과세체계 변화 비교 / 54
- 〈표 III-7〉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해외사례 정리 / 56
- 〈표 IV-1〉 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와 특징 / 59
- 〈표 IV-2〉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보험 / 61
- 〈표 IV-3〉 영국의 소득세구분 및 세율 / 68
- 〈표 IV-4〉 세제적격 보험의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 70
- 〈표 IV-5〉 일본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방식 / 71
- 〈표 IV-6〉 일본의 보험금 수령 시 상속·증여 세제 / 72
- 〈표 V-1〉 IRP 구분 / 77
- 〈표 V-2〉 퇴직연금 제도별 세제 비교 / 80
- 〈표 V-3〉 연금세제 / 82
- 〈표 V-4〉 근로자 소득계층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 / 83
- 〈표 V-5〉 국민연금(NIC) 유형별 보험료율(2015. 4. 6~2016. 4. 5) / 86
- 〈표 V-6〉 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2015. 4. 6~2016. 4. 5) / 89
- 〈표 V-7〉 NEST 자동등록제도 및 최소기여율 확대시행 일정 / 90
- 〈표 V-8〉 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2015. 4. 6~2016. 4. 5) / 93
- 〈표 V-9〉 유형별 개인소득세율(2015년) / 99
- 〈표 V-10〉 Traditional IRA의 적립한도 / 101
- 〈표 V-11〉 Roth IRA의 적립한도 / 102
- 〈표 V-12〉 탈퇴 일시금(2015년 기준) / 105
- 〈표 V-13〉 탈퇴 일시금(2014년 4월 이후 기준) / 106

■ 표 차례

〈표 V-14〉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근로자 보험료 소득공제(2015년) / 110

〈표 V-15〉 잡소득 금액의 계산(2015년 기준) / 112

〈표 V-16〉 퇴직소득 공제액(2015년 기준) / 112

■ 그림 차례

〈그림 Ⅱ-1〉 금융상품의 분류 / 17

〈그림 V-1〉 후생연금기금 운영구조 / 107

〈그림 V-2〉 후생연금기금 급여지급구조 / 108

A Study on Korean Financial Tax System

As industrial structure becomes more sophisticated the role of financial industry is getting more important. Particularly, as new-normal era, which is represented by low interest, low growth rate and low price, is brought to us the taxation for the financial product becomes a very important factor to people and companies' investment decision.

In this research we try to analyze structures and properties of financial tax system, especiall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surance and pension,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for the system.

First,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which is called "fund" in Korea, we find that un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nvestors sometimes have to pay income tax for the fund even though they made loss from the fund. We find that the main reason of the irrational taxation is caused by tax free conditions for capital gains on KOSPI and KOSDAQ stocks. We claim that capital gains need to be levied and stock exchange tax has to be abolished.

Secondly, for the taxation on insurance, we try to analyze the tax treatment on the insurance premium and insurance benefits. We find that if a person receives insurance benefits on insurance accident which is treated as non-taxable income. However if a heritor receivers life insurance benefits which is subject to inheritance tax. We claim that since life insurance is prepared for the survivors inheritance tax for the life insurance benefits need to be moderated.

In third, for the pension taxation, we find that Korean three pillars pension system and taxation scheme is too complicated to easily used and accessed by the people. So we claim that the taxation and tax treatment for the pension need to be more simple and clear.

요 약

I. 서론

-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로 금융상품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금융산업 본연의 기능인 효율적인 산업으로 자금 중개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산업의 다양화, 고도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보험산업의 더 많은 역할을 필요로 함.
 - 고령화로 인해 은퇴 이후 지속적인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원을 보장해 주는 연금의 역할 또한 주목받고 있음.
-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금융세제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저금리로 인해 금융세제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
 - 금융산업의 자금 조달과 이자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세제를 설계하는 것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건임.
- 본 보고서는 금융·보험업에 관한 대표적 상품들의 과세체계 특징을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징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 전반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논의함.

II. 금융상품과 과세

■ 금융상품은 원본손실여부,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여부 그리고 위험보장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원본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수신상품 혹은 예·적금이 있음.

○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함.

– 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증권상품이 있음.

–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는 파생상품이 있음.

○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을 보험이라 함.

– 보험계약 혹은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상품을 저축성 보험, 그렇지 않은 보험상품을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함.

■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일정기간 금전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 주식 등에 투자하여 지분투자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금을 수령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단, 증권매매차익은 몇몇 조항에 근거하여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음.

○ 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보험이익으로 분류하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과세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함.

- 은행의 예·적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함.
- 단, 채권의 경우 시장금리의 변화에 따른 채권의 가치 상승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함.

- 지분증권의 경우 지분참여 대가로 얻은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증권거래 시 거래세를 부과하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단,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장외주식 및 비상장주식거래, 해외주식거래 그리고 일정규모를 넘는 대주주의 주식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증권 매매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0.5%, 코스닥 시장의 경우 0.3%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를 과세함.

- 파생상품의 경우 매매차익 발생 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며, 다양한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은 대부분 배당소득세로 과세함.
 -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으로 한정되며 5%의 세율이 적용됨.
 - 기타 파생결합상품의 경우 상품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국내상장주식 투자분에 대해서는 과세제외하며,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채권의 이자소득, 매매차익, 국내 주식의 배당금, 해외주식의 배당금과 매매차익,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차익, 해외채권 및 주식 매매 관련 환차익 등을 과세대상 수익으로 보며 여기서 각종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함.
 -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분은 과세에서 제외함.

- 특정금전신탁이란 개인이 금융회사에 금전을 신탁한 경우를 칭하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이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함.
-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저축성보험의 만기 환급금 수령 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이익으로 분류하여 이자소득세로 과세함.
 - 단, 저축성보험을 초회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불입액이 2억 이하인 경우, 또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적립식으로 5년 이상 납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은 비과세함.

Ⅲ.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세제

- 집합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함.
 - 집합투자기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세제를 적용받게 됨.
-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결산분배하는 시점 혹은 환매하는 시점에 배당소득세로 과세함.
 - 소득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취급하여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중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 혹은 손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손실과 비용은 과세대상에서 공제함.
 - 투자손익 통산은 같은 과세기간에만 인정함.
- 배당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타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펀드 간 그리고 기간 간 손익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의 경우 주식투자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채권투자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식 투자분은 과세제외되고 채권투자분에 과세가 이루어져,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투자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펀드에 투자하여 하나의 펀드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펀드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두 펀드 간의 손익이 통산되지 않아, 이득이 발생한 펀드에 대해서는 이득금 전체에 대해 과세함.
- 투자형태와 투자지역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 시 국내주식의 매매차익만 비과세가 되는 반면, 일임형 랩(Wrap) 등을 통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복제할 경우 랩을 이용한 투자 시에는 채권 매매차익까지 비과세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시에는 투자이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나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투자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과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구분하여 과세함.

- 이자·배당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시마다 분배결산하여 원천징수함.
 - 자본이득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이를 환매 혹은 처분할 경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함.
 - － 환매·처분 시 한 번에 과세하므로 기간의 손익통산이 이루어짐.
- 미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이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함.
- 자본이득을 제외한 이득은 1년 1회 이상 분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함.
 -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을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자본이득금액과 납부세액을 통보함.
 - 적격투자회사에서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손실 발생 시 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최대 8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이자, 배당소득은 과세기간에 배분받은 금액으로 과세하며 1년 1회 이상 결산·배분해야 하며,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가액과 양도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자본거래로 인한 투자손실 발생 시 과세하지 않으며, 여타 투자신탁(펀드) 및 주식 매각이익과 통산이 가능함.

IV. 보험상품과 세제

-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령자(수익자)가 동일한 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경우 과세함을 원칙으로 함.
-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에게 연간 100만 원에 한해 1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단, 사망보험금의 경우 이를 상속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부과함.
-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함.
 - 단, 5년 이상 매월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경우 그리고 초회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불입액이 2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함.
-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령자(수익자)가 상이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 상속·증여세 혹은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함.
 -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개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자에게 상속·증여세를 부과함.
 -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함.
 - 단, 연간 70만 원 이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수익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수령 시에는 상속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함.
- 보험세제와 관련된 이슈로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소하다는 문제와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나친 상속세 과세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은 2002년 100만 원으로 증가한 이후 약 13년째 같은 수준임.
 - 2002년 100만 원의 가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2015년 144만 원의 가치와 동일함.
 - 생명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한 보험임을 고려하여 세제상의 배려가 필요함.
- 영국은 일반적인 소득세는 크게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며,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저축소득으로 과세하고 생명보험금을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됨.

- 과세가능사건의 발생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 적격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는 10년 유지 시 보험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함.
 - 비적격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세 부담을 경감함.
 - 생명보험금에 대해 비과세하나 보험금이 상속·증여될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함.
 - 단, 배우자에게 상속 시 상속세를 비과세함.
- 미국의 경우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합산하여 매해 종합과세하나 보험의 경우 해약시점에 한번 과세하여 과세이연 혜택이 있으며, 생명보험금의 경우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를 비과세함.
-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나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함.
 - 단, 배우자에게 보험금 상속 시 상속세를 비과세함.
-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료와 연금보험을 합쳐 최대 1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기 시 세제혜택이 존재함.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공제를 적용함.
- 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 이자 및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 생명보험에 근거해 만기 수령하는 보험차익은 50% 공제 후 과세함.
 - 사망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나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발생함.
 - 단, 법정상속인 1인당 500만 엔까지 상속세가 공제됨.

V. 연금과 세제

-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공적연금과 준공적(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납입 시와 수령 시의 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공적연금의 경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여금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금 수령 시에는 종합과세함.
 - 준공적(퇴직)연금의 경우 고용주가 납입한 납입금은 고용주에게는 손금처리, 근로자에게는 비과세되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됨.
 - － 단, 퇴직연금계좌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부분으로부터의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함.
 - － 퇴직연금은 2022년까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준공적연금이 라 칭함.
 -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납입 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함.
 - － 단,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분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으로부터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여타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과세함.

〈요약 표 1〉 연금세제 개요

구분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DB·DC·퇴직RP	적립RP	
가입형태		의무	의무	임의	임의
납입 시 세제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제혜택한도		급여의 9%	급여의 8.3%	연 300만 원	연 400만 원
납입한도		—	—	1,800만 원/연	
중도인출		인출불가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
만기 수령	연금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일시금	인출불가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

- 현재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세제혜택 방식 변화로 인해 사적 연금 납입유인이 감소하였으며 세제혜택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연금가입 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각 연금별 납입 시 그리고 수령 시의 세제가 모두 다르고, 연금계좌로 묶여 있는 퇴직 및 연금저축의 세제 역시 상이함.
 - 연금저축납입액의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중산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이 감소하였음.
 - 또한 노후소득원 준비가 필수적인 저소득층에는 세제혜택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설계됨.
 - 공적연금의 경우 기여금은 과세제외되고 수령 시 저축소득세율을 적용함.
 - 퇴직연금은 본인기여금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수령 시에는 저축세율에 따라 과세함.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역시 공·사적연금 모두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EET 연금세제를 가지고 있음.
 -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18,000달러 수준이며 노후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자의 경우 납입한도가 6,000달러 추가됨.

-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사적연금 모두 EET 연금세제를 적용함.
 - 공적연금의 경우 가족의 보험료도 세제혜택이 주어짐.

VI. 결론

- 현재 우리나라 금융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임.
 - 이는 과거 이자·배당을 중심으로 설계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자본이득추구와 파생상품으로 확대된 현재의 자본시장에 적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자본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체계로 개선해야 함.

- 보험 및 연금세제 역시 해당 금융상품들이 위험보장 및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적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보장성보험 가입을 통해 사적안전망을 준비하는 행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함.
 -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역할과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산업구조는 비교적 동일한 재화를 대량 생산하는 방식 위주의 산업화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 변화에 따라 금융의 자금조달, 위험보장 및 금융상품 자체로서의 부가 가치 창출 등 금융·보험의 역할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 감소에 대응한 노후 소득원의 확보 역시 우리사회가 금융·보험업을 통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시대에는 평균수명은 늘어났으나 개인이 은퇴연령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을 창출하기는 어려우므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금융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렇듯 금융·보험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투자자가 금융·보험상품 및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금융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투자자 개개인 그리고 국가의 사회후생 증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회,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는 저성장·저금리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금융투자자의 금융·보험상품 투자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예·적금 위주의 투자가 금융투자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혹은 위험보장 및 장기투자가 가능한 보험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금융·보험세제는 금융투자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금리 2% 수준의 예금상품과 비교했을 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예: 소장펀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익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세제¹⁾는 투자의 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금융의 가장 큰 역할은 금융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금융 및 실물시장 참여자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투자자의 자금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급하여 투자자와 생산자 모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금융의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편익 측면에서, 국민이 합리적인 보험·금융 투자를 통해 생애동안 필요한 위험보장, 자금 운용 및 자산형성을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금융·보험상품에 쉽게 접근하여 사회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직관적이고 상식과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금융업권 및 상품의 특징 및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세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 및 금융투자업은 단기저축 및 금융투자를 통한 재산형성 및 단기자본 조달의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으며 보험의 경우 위험보장 및 장기저축 그리고 장기자본조달의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이러한 금융업권 간 특성 역시 금융세제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본 보고서는 금융·보험업에 관한 대표적 상품들의 과세세제 특징을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의 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금융·보험세제의 특징과 방향성을 논의하여 금융·보험세제의 나아갈 바를 생각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 및 보험세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금융, 보험, 연금 등의 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기가 어려우며 각각의 분야를 연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금융투자 및 집합투자기구 과세와 관련한 연구는 홍범교·이상엽(2012, 2014)이 자본이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현재 과세체계의 문제점보다는 과세논리상의 과세가능성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김용민(2010)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특징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이 역시 과세이론상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1) 본고에서 세제(稅制)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전반을 의미하며, 세제혜택(稅制惠澤)은 세제를 통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편, 문성훈(2010)은 펀드와 직접투자가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를 과세체계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체계의 해결책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오윤·문성훈(2015), 홍범교·김진수(2010) 등이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본이득세 도입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펀드과세 등에 대한 확대된 논의는 전개하지 않았다. 보험세제의 경우 신보미(2013)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관련 법 간의 유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신보미의 연구는 저축성보험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연금세제에 있어서 정원석·강성호(2015a), 문성훈·김수성(2015)은 연금의 납입 시 세액공제로 세제혜택변화가 경제주체의 연금가입유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들은 세액공제로 변화가 중산층의 연금가입유인이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에는 특별한 연금가입유인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 역시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납입 시 세제만을 분석한 부분적인 분석에 그쳐 연금세제 전반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금융·보험세제에서 일반적인 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보험 그리고 연금의 전반적인 과세 방식 및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데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세제에 관해서는 손실 발생 시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재 집합투자기구과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 그리고 투자지역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또한, 보험세제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세제와 해외 보험세제를 조사 및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유사연구와 차별화를 기하였다. 연금세제 역시 우리나라 연금세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연금세제가 중산층·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조사한 금융선진국은 유럽금융의 중심지로서 자본시장, 보험 및 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그에 대한 긴 과세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현재 세계금융의 중심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과세제도 설계 시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했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난 10년간 금융소득과세일체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해 점진적이지만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온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금융소득의 정의와 전반적인 금융상품의 특징과 과세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인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방법 및 체계를 살펴보고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보험의 과세방법 및 체계에 대해 정리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며 5장에서는 연금과세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슈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금융소득과 과세

1.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가.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특성에 따라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상이하다. 은행의 경우 투자자금 출금 시 원본(투자원금) 지급이 약속된 금융상품을 공급하며 이러한 상품을 수신상품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수신상품으로는 은행에서 흔히 접하는 예·적금 상품을 들 수 있다. 증권 등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본 및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가능한 위험이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투자 원본 이상의 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파생상품 등이 있으며, 최대 손실액이 원본 전액손실에 그치는 경우는 증권(주식, 채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험업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상품을 제공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을 보험상품이라 한다. 보험상품은 순수하게 위험보장만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만기 시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과 위험보장과 함께 여타 금융상품처럼 만기 시 보험상품으로부터 금전적 이익(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²⁾

2)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제4호 참조.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저축성보험,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함.

〈그림 II-1〉 금융상품의 분류



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분류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상품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의 수신상품과 같이 일정기간 금전대여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채권 등에 투자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 주식 등에 투자하여 지분투자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금을 수령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때, 채권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채권가격의 상승,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이익을 얻게 된 경우 이를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보고 소득분류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혹은 보험보장기간 만료 이후 수령하는 만기환급금액은 보험이익으로 분류한다.

2. 금융상품과 과세

가. 금융상품별 소득과 과세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원리는 크게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로 나눌 수 있다. 열거주의는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그 분류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위 8가지 소득으로 정의 혹은 분류되지 않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반면, 포괄주의는 소득의 형태를 불문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우 위 열거된 8가지 소득가운데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이들 소득을 연단위로 결산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로 분류과세³⁾하는데, 이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의 형태 및 납세자의 담세능력이 다른 것으로 보아 여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며 따라서 과세행정에서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한다.⁴⁾ 이자·배당소득은 해당 소득 발생시점에 14%의 단일 세율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세하게 된다. 이때,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총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세율 14%의 분리과세⁵⁾를 통한 원천징수로 납

3) 분류과세는 여타 소득과는 종류를 달리하는 과세로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함.

4)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9/09_02_02.html).

5) 분리과세는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적은 소득에 대해 납세 및 과세의 편의성을 위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뜻함.

세 의무는 종결된다. 하지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총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여타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총소득에 따른 누진적 소득 세율(progressive tax rate)을 적용받게 된다.

주식 채권 등 증권매입 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이익의 경우 소득 형태를 고려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를 비과세한다. 개인의 채권매매 차익, 소액주주의 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 파생상품 거래 차익 등은 비과세된다. 하지만, 대주주의 주식거래 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외 장외주식거래 차익, 해외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역시 정확한 소득이 분류되지 않아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예정이다.

참고 1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이자소득이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득을 의미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이익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계약기간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999. 1. 1 이후 최초로 가입분부터 과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배당소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소득을 의미함.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2009. 2. 4 이후 받은 이익부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2007.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자료: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나. 금융상품별 과세제도⁶⁾

1) 수신상품

은행업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등 저축 상품을 보통 수신상품이라 칭한다. 예·적금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금전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때는 최소 원금과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원금보다 많은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당국은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원금을 예금으로 운영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이자를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정기예금(ELD: Equity Linked Deposit)의 경우 예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상품이지만, 원본손실이 없기 때문에 수신상품으로 분류한다. 주가연계예금(ELD)은 이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원본의 이자소득, 이자 투자분의 자본이득 혹은 손실분을 통합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기타 수신상품들은 이와 유사한 상품의 과세 방식을 차용하여 과세한다.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등은 채권에 대한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금(金)적립 상품, 금의 가치와 연동되는 예금 또는 대출 상품 등은 파생결합증권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2)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⁷⁾ 소득세법에서는 ‘채권 등’의 넓은 개념으로 채무증권을 포괄하고 있다.

6) 금융상품별 과세제도는 손영철·서종균(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타 연구들을 참조하여 정리함.

7)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으로부터 약속된 금리(표면금리)에 의한 이자소득과 시장금리변동으로 인한 채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시장의 채권이자율이 변동하여 채권가격이 바뀔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를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연 표면금리 5%의 채권가액 1억 원짜리 채권을 1년간 보유할 경우 이자 소득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나, 같은 등급의 시장채권금리가 4%로 하락하였을 경우 5%의 이율을 약속한 채권의 가격은 1억 2,500만 원이 되어 해당 채권 소유자는 2,500만 원의 자본이득을 얻게 되나, 이를 양도하여 얻게 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⁸⁾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국내에서 발행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고 있다. 해외 발행 채권의 경우, 표면이율에 따른 이자,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에 의한 자본이득, 그리고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익이 존재하는데, 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세로 과세하고 가격변동으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하지만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RP, Repurchase Agreement)의 경우 매매차익 역시 이자소득세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그 이유는, 환매조건부 채권의 경우 매매거래의 형태는 유가증권거래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증권을 발행자가 다시 사간다(Repurchase)는 점에서 그 실질은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나,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채권의 경우 3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장기 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내외 채권을 의미한다.

3) 지분증권

지분증권이란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은 지분증권을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

8) 이는 시장금리와 채권가격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한 예이며, 만기 및 보유 기간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 있음.

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 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⁹⁾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정의 및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분참여의 대가로 얻게 되는 배당과, 기업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매매차익(자본이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식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주식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경우 비과세한다. 하지만 대주주의 주식거래, 비상장 주식거래, 장외시장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의 판단 기준의 경우 2015년까지는 유가증권시장(KOSPI)의 경우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이 1% 이상 혹은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보유주식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되어 주식거래 양도차익 과세를 위한 대주주 판단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주식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2015년까지는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10%를 부과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시 30%, 1년 이상 보유 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대주주 역시 주식 양도 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9) 자본시장법 제4조.

〈표 II-1〉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구분		과세여부		적용세율
		과세	비과세	
상장 법인주식	유가증권시장거래주식	대주주	소액주주	• 중소기업: 20% •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30% • 그 이외 20%
	장외거래주식	모든 주주	—	
비상장법인주식		모든 주주	—	

자료: 손영철 외(2014) 자료를 2015년 세법개정에 맞추어 재구성.

주식투자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는 대신 증권의 거래에 따르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¹⁰⁾ 증권거래세율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0.5%, 코스닥시장의 경우 0.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 0.15%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하여 투자자의 실질 세 부담은 코스닥과 동일한 거래액의 0.3%가 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증권거래세의 납세 주체는 주권을 매도(양도)한 자가 된다.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역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0%, 그 이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4) 파생상품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원본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스왑 계약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하거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혹은

10)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는 1956년 개소하였고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다가 1971년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폐지되었음. 하지만 1978년 8월 이후 연말까지 건설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1/3토막이 났던 건설주파동을 계기로 단기적 투기를 막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1979년 재도입됨(<http://shindonga.donga.com/3/all/13/102434/1> 참조).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

초기 파생상품은 기초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적은 자금으로 고수익을 누리기 위한 투자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어떠한 소득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파생상품 투자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장내 파생상품 투자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5)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한다.¹²⁾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변화와 같은 외생적인 지표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데, 기초자산의 위험정도와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이자율연계증권, 주가연계증권, 통화연계증권, 신용연계증권, 실물연계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크게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워런트증권(ELW) 그리고 파생상품연계증권(DLS)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 등에 연동하여 만기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증권회사가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주가연계증권은 주가연계예금(ELD)과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의 상당부분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원금의 일부 혹은 채권투자로부터의 이자를 주가선물 혹은 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데, ELD와의 차이점은 포트폴리오의 차이 등으로 인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예금자 보호 역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은 앞서 언급한 파생상품 중 주가연계증권(ELS)을 제외한 이자율연계증권, 통화연계증권, 상품연계증권 등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11) 자본시장법 제5조.

12) 재정경제부(2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주가워런트증권(ELW)은 매수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래의 만기일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주권을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주가워런트증권(ELW)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하나 해당 증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사거나 팔 권리라는 측면에서 옵션과 구조와 성질이 유사하여 실질은 선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주가워런트증권의 매매차익이나 권리행사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상품연계증권(DLS)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주가워런트증권(ELW)은 비과세한다.

6) 집합투자기구(펀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¹³⁾ 집합투자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이라는 점과,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운용에 대한 운용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합투자기구는 계약형태에 따라 신탁형, 회사형 그리고 조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신탁형(Trust)의 경우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자산을 신탁하는 형태이고, 회사형(Company)은 고객이 금융회사가 설립한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의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회사의 형태로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가 있다. 조합형(Partnership)은 고객과 금융회사가 투자를 위한 조합을 형성하여 투자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형태로 투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 형태가 있다. 다양한 계약형태와 투자기구 형태가 존재하나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13)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표 II-2〉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투자기구분류	계약형태	투자기구형태
집합투자기구	신탁형	투자신탁
		투자회사
	회사형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조합형	투자익명조합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상품 형태에 따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자를 통한 소득은 채권의 이자소득 및 매매차익, 주식의 배당금과 주식의 매매차익, 해외주식의 배당금과 매매차익,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차익, 해외채권 및 주식 매매 관련 환차익 등으로 구성된다. 집합투자기구(펀드)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각각의 투자 상품별로 분류할 수 없는 불투명체로 보아 펀드의 전체손익을 통산하여 전체 투자기구의 손익에 따라 과세한다. 단, 개별 상품 투자 시 비과세되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제외되며 과세대상 액수 계산 시 투자수익에서 각종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7) 상장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 Fund)

상장집합투자기구(ETF)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으로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구조화된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칭한다.¹⁴⁾ 따라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으로서의 특징과 기초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수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ETF의 구성이 가능하다.

14)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개인이 ETF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는 분배금과 ETF 증권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자본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배금이란 투자된 금융상품에서 이자·배당 등이 발생할 경우 ETF의 가치와 지수 간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지수를 초과하는 가치 분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여 지수와 가치를 일치시킬 때 발생하는 금액을 분배금이라 한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고, ETF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역시 배당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단, 주식의 가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 주식매매차익 비과세와의 형평성에 따라 ETF 매매차익 역시 비과세한다.

8)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이란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를 칭하는데, 투자자가 투자의 방향을 위탁 금융회사에 지정하면 금융기관은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 후 수익자에게 실적을 배당한다. 집합투자기구(펀드)는 특정 투자형태를 정하고 투자자가 가입하나, 특정금전신탁은 고객과 금융회사가 개별적 계약을 맺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개인이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명체로 보아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한다.

9) 보험

보험은 공동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공동비축금을 마련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기술적 제도¹⁵⁾로서,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3자 또는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계약¹⁶⁾을 지칭한다. 보험계약의 주체로는 보험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혹은 보험의 목적물, 보험을 수령하게 되는 보험수익자 그리고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의 관

15) 양승규(2005), 『보험법 제5판』, 삼지원, p. 53.

16) 보험경영연구회(2010), 『보험과 리스크 관리』, 문영사, p. 70.

계에 따라 보험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세법상 보험은 크게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의미한다. 반면,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또는 중도해지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납입 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¹⁷⁾ 이는 기본적으로 보장성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입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는데,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자산의 멸실·손실로 인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보험계약에 따라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불입액이 2억 이하인 경우 또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적립식으로 5년 이상 납입한 저축성보험 및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역시 비과세하고 있다.¹⁸⁾

17)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반대해석.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Ⅲ.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세제

1. 현황

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¹⁹⁾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로는 고객과 금융기관의 계약형태에 따라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신탁형은 고객과 금융회사가 신탁(Trust)계약을 맺는 형태이고, 조합형은 고객이 금융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투자 과실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회사형은 고객이 금융회사가 설립한 투자회사의 주주가 되어 투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는 형태이다.

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세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정의하고 있는 투자기구이어야 하고, 둘째,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하며, 셋째, 실물이 아닌 금전에 의한 위탁과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⁰⁾ 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회사형은 배당으로 조합형은 소득유형별로 과세한다.

19)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및 제8항.

참고 2 배당 그리고 분배

- 배당은 소득세법상 국내·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로부터 수령한 이익이나 잉여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²¹⁾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배당은 법인으로부터 주주 등의 관계로 인해 법인 혹은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의 이익금의 일부를 수령하는 것을 배당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세제상의 특징은 배당의 정의에 따른 배당 소득은 배당소득세(세율 14%) 과세대상이 됨.
- 분배(distribution)란 재화 혹은 용역의 생산과정에 참여한 개인, 법인 등 구성원이 그 생산된 재화나 용역 또는 이에서 비롯된 소득 등을 사회적 법칙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²²⁾
 - 법률상 분배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민법, 상법 등에서는 단체 등에서 단체 구성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의미로 사용됨.
 - 따라서, 배당은 분배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배당이 아닌 분배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존재할 수 있음.
- 집합투자기구를 규정하는 법조문에 배당이 아닌 분배로 표기한 이유는 결산시 이익을 나누는 행위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회사형인 경우 배당을, 조합형인 경우에는 분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2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22) 장재형(2014).

나.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방법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본적으로 통산하여 결산 분배하는 시점 혹은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단, 주식양도 차익 등 일부손익은 과세제외하고 여타 모든 소득의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하므로 결산시점에 과세대상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며, 과세기간 중 결산 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산을 환매하는 경우 투자이익을 현실화하는 시점에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이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가 이자배당 및 매매차익 등을 합산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서 손실과 비용을 공제한 후 투자자의 몫이 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수수료 및 유지보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한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특징은 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파생상품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주식의 자본이익의 경우 과세제외된다는 점인데, 이는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및 자본시장활성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단, 채권 및 장외 파생상품의 양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환매 혹은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 혹은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소득 계산 시 분배·환매 혹은 양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전체 가격에서 과표제외 항목은 제외한 후 과표기준을 결정하며, 각 과세연도별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결산하므로 과세연도 간 손실과 이익은 통산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시점은 투자자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시점(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 혹은 결산일, 집합투자증권의 매도일, 재투자 특약으로 인해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시킨 날 등)을 소득시기로 보아 동일한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정한다. 과세의 집행은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리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이때,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데, 이는 완납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해도 종합소득세 선택은 불가능하다. 만약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총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 여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다.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특징과 상품별 과세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는 전반적으로 실체이론을 따르나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관이론에서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실체 과세이론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도관이론은 투자기구는 투자금이 투자되는 도관(Pipe line)일 뿐이므로 모든 금융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적격투자기구는 해마다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실체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펀드에 이익이 지급되는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펀드 자체를 수익주체인 실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세표준 산정 시 각종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사용된 수수료를 운용수익으로부터 공제하는데, 이 역시 경제적 실체인 투자기구의 비용을 인정하는 실체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 상장주식 거래차익 등 일부 손익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도관이론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납세의무자를 투자자로 한 것은 실체가 있는 개인에게 과세 의무를 지움으로서 징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 매매차익 등 일부손익 과세제외의 경우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특정 이론을 따라 과세방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방식을 만들어 놓고 어느 이론에 따라 구성했는지를 분석하니 실체이론을 따르나 일부 예외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참고 3 실체이론과 도관이론

■ 실체이론(Entity Theory)은 집합투자기구의 사회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하는 이론임.

○ 즉,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이 수탁자인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

– 투자기구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자와는 별개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 단, 이익의 90% 이상을 결산·분배하는 적격투자기구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이 최종적인 귀속자인 투자자에게 귀속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이 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다가 결산시점에 지급되므로 투자자 과세 시 배당이익으로 과세하게 됨.

○ 실체이론은 투자기구의 사회, 경제적 역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지되나, 반면 실질과세원칙을 외면한 채 형식을 좇아 과세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도관이론(Conduit Theory or Aggregate Theory)은 집합투자기구를 독립적인 과세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Conduit)으로 보는 이론임.

○ 즉, 집합투자기구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고 투자펀드가 맡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영 이익 또는 손실을 그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세함.

○ 도관이론에 근거하여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됨.

참고 3의 계속

○ 도관이론은 수익의 흐름이 궁극적으로 귀착되는 자를 관찰하여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이 투자기구에 머물렀다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됨에 따른 과세상의 시차를 설명할 수 없고, 투자기구에 소득이 유입되는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자료: 김용민(2010), 「집합투자기구 세제에 관한 연구」 내용을 재정리.

2. 이슈 및 주요쟁점

집합투자기구(펀드) 과세의 주요 쟁점은 일부손익 과세와 손익통산 불가 등으로 인해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 투자형태 혹은 투자 지역 그리고 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이슈 및 쟁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손실 시 과세의 문제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투자액의 일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손익 항목의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매매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이자·배당 등에서 수익이 발생했으나 투자기구(펀드)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유가증권의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이를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해 설명하면,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여 주식 투자분에서는 100만 원의 매매손실(자본손실)이 발생하고, 채권투자분에서는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주식

투자분 매매손실의 경우 과세제외되나 채권투자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져 투자자 입장에서는 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해 투자된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손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표 Ⅲ-1〉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장주식 과세제외의 예

구분	주식투자손익	이자·배당	통산손익	과세여부
펀드 A	-100	+50	-50	이자배당(50)에 대해 과세
펀드 B	+100	+50	+150	이자배당(50)에 대해 과세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시 과세가 되는 또 다른 경우로 두 개의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한 경우 두 펀드를 통산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 A의 과세대상 소득이 10만 원이고 역외펀드 B에서 3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A와 B의 손익을 통산할 경우 2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나 과세 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펀드 A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순이익에 과세하고, 동일한 규모의 소득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기 위해 여러 수익과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재 과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물론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일반적인 원칙을 금융소득과세에 비추어 볼 때 펀드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체계와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 집합투자기구의 과세－펀드 간 손익통산의 문제

구분	역외주식투자	이자·배당	통산손익	과세여부
펀드 A	0	+10	+10	이자배당(10)에 대해 과세
펀드 B	-50	+20	-30	비과세
개인합	-50	+30	-20	이자배당(10)에 대해 과세

투자기간을 고려한 손실의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집합투자기구는 1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해당 과세대상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²⁴⁾ 장기투자 시 과세기간 간 통산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손실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다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투자 마지막 해에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수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의 통산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투자 첫해에 과세대상 소득에서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둘째 해에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다음 셋째 해에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연 1회 결산·분배 시 첫째 해에는 50만 원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나 둘째 해의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대상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며, 마지막 해에는 다시 50만 원에 대해 과세하여, 투자기간 전체로 보았을 때는 투자이익이 없으나, 100만 원의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²⁵⁾

〈표 Ⅲ-3〉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연도별 손익통산의 문제

구분	2013	2014	2015	통산손익
펀드손익	+50	-100	+50	0
과세여부	50에 대해 과세	비과세	50에 대해 과세	통산소득은 0이나 과세

정부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 과세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 4월 결산 분부터는 이자·배당 등 소득은 매년 결산·분배하여 과세하되,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 시 일괄과세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4) 집합투자기구를 연 1회 결산·분배는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실체로 보아 과세한다는 의미와 함께 장기투자로 인해 수익이 누적될 경우 수익을 현실화하는 시점에 누진세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음.

25)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모두 합쳐 환매 시 일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 이자·배당 등 확정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매해 결산·분배하여 과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차익 손실 시 이자·배당 소득과 통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과세대상의 예외 존재, 집합투자기구 간 통산 불가 등 투자손실 발생 시에도 투자자에게 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손실 발생 시 과세가 될 수 있는 현재 과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나. 투자 형태에 따른 과세형평문제

개인투자자의 경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시 과세 방식의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를 투자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개인이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만 이자·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며,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반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연 1회 결산을 통해 투자자가 이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상장주식투자로 인한 자본손익을 제외한 과세대상 평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실체과세 이론을 따르는 과세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할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혹은 평가차익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²⁶⁾ 따라서,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 혹은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경우 신탁 혹은 일임형 랩(Wrap) 등을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투자금의 미실현 이익 및 채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배당과세를 회피할 수 있어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 국내외 구분에 따른 과세형평성

국내 주식형펀드의 매매 및 평가차익은 비과세되나 해외주식형 펀드의 매매 및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앞서 기술한대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제도는

26) 개인의 경우 역시 채권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함. 따라서, 펀드의 채권투자 자본이익의 경우 과세 당국에서 해당 거래가 사업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외 조항이며, 펀드 투자 시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 적용은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상장주식으로 부터의 자본이득에서도 투자자산이 국내 혹은 국외 펀드 여부에 따라 투자자의 세 부담 및 세후수익률이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하였음에도 투자지역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나뉘게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해외펀드투자에 대한 비과세가 특례형태로 도입된 적이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일인당 3,000만 원까지 해외투자에 펀드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펀드 비과세특례’ 규정에 기반을 두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소득세법의 ‘일부손익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였다. 과거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원화가 강세인 시기에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번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의 특이 사항으로는 과거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제도는 현지통화 표시 시세차익으로 한정되어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였으나,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해외투자 비과세 펀드의 경우 환차익 역시 비과세되도록 정비되었다.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시에도 역외펀드 및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할 경우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반면, 역외 및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직관적이지만 펀드의 경우 펀드자체를 실체로 보는 관점을 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주식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 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 규모가 크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액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반면, 펀드로 부터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을 적용받을 경우 직접투자 및 여타 펀드와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자·배당 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대되는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역외펀드 혹은 해외펀드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내 주식직접투자와 펀드투자 간에 고려된 형평성이 해외 주식투자 시에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적 실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상이한 경우 금융투자로부터 효용 및 수익률보다 세제로 인해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산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켜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라. 투자기구 형태에 따른 과세 상이점

실질이 동일함에도 과세가 다른 경우는 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른 과세 방식의 차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회사형과 신탁형의 이익 실현을 위한 분배 혹은 환매 시 모두 배당소득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사형은 투자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되파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고, 신탁형의 경우 채권(수익증권)을 시장에 되파는 것과 같으므로 배당 소득으로 과세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기구의 주식 혹은 수익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양도) 시 주식형 혹은 신탁형 종류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만약, 제3의 투자회사에 수익증권 혹은 집합 투자회사 지분증권을 매도할 경우 그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일반인에게 매도할 경우 과세표준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²⁷⁾ 반면, 신탁형의 경우 주식형과 신탁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배당으로 과세한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과세의 경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존재하며 분류과세로 인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20%의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시 14%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으나 소득금액이 여타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과세의 적용

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규정에 따른.

여부는 투자자 상황에 따라 세후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앞서 소개한 해외 투자에 대한 역내/역외 ETF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역내 ETF는 주로 신탁형인데 반해 역외 ETF는 주로 회사형으로 구분되므로 역내 ETF는 배당소득세로 역외 ETF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고액투자자들은 역외 ETF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그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로 연결된다.

3. 해외의 집합투자기구 세제

가. 영국

1) 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보유, 운용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구로 크게 승인형과 비승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투자신탁은 투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간접투자기구로써 투자회사의 성격과 간접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투자신탁의 종류로는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Finance Service and Markets Act) 제243조에서 승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형 투자신탁²⁸⁾과 비승인형 투자신탁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승인형 투자신탁은 개방형 투자신탁²⁹⁾과 폐쇄형 투자신탁³⁰⁾으로 구분된다. 개방형 투자신탁에는 승인단위신탁(Authorized Unit Trust)과 개방형 투자회사(Open-Ended Investment

28) 승인형 투자신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영국 내에 있고 주요한 사무를 영국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해외투자펀드가 설립되어도 영국 내에서 투자자문과 관리업무가 수행되어야 함.

29)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낸 자본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 신탁.

30) 자본금의 증감이 증자·감자로 이루어지는 투자 신탁으로 투자자가 신탁 회사에 대하여 매입 청구, 해약, 신탁 재산의 감축을 요청할 수 없음.

Companies) 등이 있으며, 폐쇄형 투자신탁에는 승인투자신탁회사(ITC: Approved Investment Trust Company)와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 Venture Capital Trusts) 등이 있다. 비승인형 투자신탁은 신탁, 파트너십, 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비승인 단위신탁(Unauthorized Unit Trust)과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표 Ⅲ-4〉 영국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구분	형태	투자형태
승인형	개방형	승인단위신탁
		개방형투자회사
	폐쇄형	승인투자신탁회사
		벤처캐피탈 투자신탁
비승인형	—	비승인 단위신탁
		비승인 투자회사
		조합(파트너십)

영국은 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투자사업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소득에 대해 구분하여 과세한다. 투자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크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투자자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소득을 투자회사에게 배당(국내원천 배당소득)하기 때문에 투자회사에게 또 다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법인으로부터 배당(국외원천 배당소득, FID: Foreign Income Dividend)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배당받기 때문에 투자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투자자산 운용결과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2) 승인형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가) 승인형 투자신탁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데 사용되는 도관으로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나 금융서비스와 금융시장법 제24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체가 인정되어 법인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승인단위신탁(AUT)과 승인투자신탁회사(ITC)는 영국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투자신탁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투자신탁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국내원천배당소득의 경우 이미 내국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분배되었기 때문에 투자신탁에게 이중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투자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이를 배분받은 투자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국외원천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투자신탁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할 경우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투자자산의 운용결과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요건이 충족된 투자신탁의 경우 승인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 그리고 승인단위신탁(AUT)과 개방형 투자회사(OEIC)의 경우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반드시 결산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만큼 배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외에도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은 벤처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벤처캐피탈 투자신탁은 영국세법상 투자회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과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허용한도 이내로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분배한 배당소득 또한 과세하지 않는다.

나) 투자자

투자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투자한 자산의 운용성과를 배분받은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투자신탁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은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자본이득세로 구분된다.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투자자(개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배분받은 금액에 1/9를 Gross-up 하여 배당소득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1/9 Gross-up 비율에 의한 임퓨테이션 방식³¹⁾에 의해 배당세액을 공제한다. 배당소득세율은 투자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율과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10%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고율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32.5%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투자자에게 국외원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분배한 경우 투자신탁은 세율 20%로 원천징수된다.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손실)을 분배받을 수 없는데 따라서 자본이득(손실)은 수익증권에 포함되어 평가하며 투자자가 이를 환매·처분할 경우 발생한 순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신탁(VCT)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은 투자자는 배당소득세뿐만 아니라 수익증권의 환매·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세도 과세부담하지 않는다.

3) 비승인형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가) 비승인형 투자신탁

비승인형 투자신탁의 대표적인 단위신탁(UT)은 엄격한 신탁계약으로 도관성이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투자자산 운용결과

31) 임퓨테이션 방식은 출자자가 수령한 배당과 그 배당에 대한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액을 개인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한 후 산출세액으로부터 법인단계에서 그 배당분에 대해 지불한 귀속세액(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임. 이는 법인 원천소득 중에서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임. 투자자의 개인소득세액 산정식=(배당금+귀속법인세액+다른 종합소득)×개인소득세율-귀속법인세액×귀속법인세액=배당금(원천징수된 세액 포함)×(법인세율/(1-법인세율))

발생한 자본이득은 수탁자의 소득으로 본다. 수탁자는 별도의 개인으로 간주되어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과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위탁자를 위하여 소득세를 대납한다. 이때, 수탁자는 필요경비 등이 공제된 세후 소득을 위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나. 미국

미국의 간접투자기구는 설립형태에 따라 법인형, 조합형(Partnership), 신탁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법상 법인으로 분류된 간접투자기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조합형 간접투자기구나 신탁형 간접투자기구는 각자의 과세제도에 따라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차적으로 투자대상 회사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차적으로 투자회사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어 이중과세(삼중과세)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조정해주는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접투자기구는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적격투자회사(RIC: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³²⁾로 분류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세무상 특칙 Subchapter M³³⁾을 적용하

32) 미국 연방세법상 적격투자회사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 ① 당해 과세연도 전체에 걸쳐 간접투자기구는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 운용투자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 간접투자기구가 미국 연방세법상 적격투자기구로 취급되도록 신고하여야 함.
- ③ 과세연도 동안에 간접투자기구의 총소득 중 최소 90% 이상이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증권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이익, 외화거래차익, 증권 또는 외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투자소득에서 발생해야 함. 이때 총소득을 구성함에 있어서 면세이자소득은 포함하지 않음, 증권의 양도손실은 제외함.
- ④ 과세연도 각 분기 말에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한 간접투자기구의 자산 중 50% 이상이 반드시 현금성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함.
- ⑤ 간접투자기구는 어느 한 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특수관계자이면서 동일한 유형의 사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간접투자기구 전체 자산의 2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⑥ 상기 요건들을 만족하는 간접투자기구는 Subchapter M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익의 잉여금을 유보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자본이득을 제외한 일반소득과 면세이자소득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함.

33) Subchapter M은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세부

고 있다. 반면, 적격투자회사로 분류되지 않은 조합형 간접투자기구인 경우 일반 조합형 과세제도에 따라 과세된다.

1) 적격투자기구의 과세제도

적격투자기구는 법률상 실체가 인정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도관성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는 경감된다. 적격투자기구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순자본이득과 순영업손실을 포함한 후 지급배당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당해 연도 일반소득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이를 지급배당 공제제도로라 한다.

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하며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때, 자본이득을 제외한 일반소득과 면제이자소득은 90% 이상이 배당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나 자본이득은 반드시 배분될 필요가 없고, 자본이득이 유보되는 경우, 자본이득소득은 적격투자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며 이러한 경우 최고세율 34%를 한도로 두고 있다. 그리고 자본이득을 배분한 경우, 적격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그들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자본이득금액과 납부세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본인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적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투자자에게 배분된 소득은 크게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통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 일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면세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일반배당소득은 적격투자회사의 총소득 중 분리과세 배당소득, 면세이자 배당소득, 자본이득 소득을 제외한 후 투자자에게 분배된 소득을 의미한다.

정의, 운용 및 세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령임. 세부 내용은 미국 Government Publishing Office의 <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0-title26/pdf/USCODE-2010-title26-subtitleA-chap1-subchapM.pdf> 참조.

이를 지급받은 투자자(개인)는 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한 적격투자회사는 지급배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정책적 목적상 특정기업에 투자할 경우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시 일반배당소득과 구분하여 신고하며, 적격투자회사가 분배한 금액의 원천이 비과세지방정부채, 비과세연방정부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일 경우 면세이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비과세한다.

자본이득은 적격투자회사가 과세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투자자(개인)에게 서면 통지에 의해 지정하여 배당한다. 자본이득을 분배받은 투자자는 적격투자회사 지분을 소유한 기간에 상관없이 장기자본이득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장기자본이득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적격투자회사가 자본이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적격투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지불하였어도 투자자는 자본이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적격투자회사에서 투자자산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격투자회사의 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자본이득을 초과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격투자회사는 순자본손실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적격투자회사 단계에서 자본이득과 8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적격투자회사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배당락일 현재 실제 배당을 지급받고 배당이 차감된 가격으로 주식이 처분된 경우, 투자자는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처분된 주식에 대해서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인식하는 거래차익은 환매되는 규모에 따라 자본손익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법인의 감자 시와 과세처리가 동일하여 지분비율을 균등하게 감자하면 유보금 범위 내에서 받은 대가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고, 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금의 회수에 해당하여 자본이득으로 처리한다.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지급되는 때에 배당소득을 과세하며 자본이득은 적격투자회사가 분배하기로 지정한 날짜가 포함된 과세연도에 과세한다.

다만 10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 중 배당을 선언하고 익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배당선언 연도에 배당을 분배한 것으로 의제하며, 적격투자기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매년 말 혹은 분기 말에 결산하여야 하며, 매년 말 적격투자회사 소득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2) 조합형의 과세제도

조합형³⁴⁾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 중 적격투자회사로 분류되지 않은 간접투자구에 대해서는 조합형 과세제도인 Subchapter K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이 중 개방형(Public Traded Partnership) 간접투자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때, Subchapter K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접투자기구는 Check-The-Box Rule에 따라 법인의 과세방법이나 조합형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형 과세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과세한다.

조합형 과세방법이 적용된 경우, 간접투자기구는 투자회사법(ICA of 1940)상 투자회사로 분류되며 도관성이 인정되어 분배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의무가 없고 조합원이 그 과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과세소득은 조합형 간접투자기구의 소득에 필요경비와 이익 및 손실을 반영한 후 이를 조합원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산출하며, 이를 배분받은 투자자는 배분받은 금액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형 간접투자기구에서는 투자자산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 단계에서 자본손익을 인식한다. 간접투자기구는 실체가 부인되고 조합원이 과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순자본이득과 순자본손실은 조합원에게 분배되며,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먼저 상계되며 자본이득을 초과한 순자본손실은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34) UPA §6(1)은 조합형을 “2인 이상의 사람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로서 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것은 여러 명의 파트너들에 의해서 소유된다는 점에서 개인기업과 다르며, 법인격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도관이라는 점에서 법인과도 다름.

다. 일본

일본의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형인 투자신탁과 회사형인 투자법인으로 분류한다.³⁵⁾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신탁약관이나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위탁자의 지시여부에 따라 위탁자 지시형 투자신탁과 위탁자 비지시형 투자신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투자신탁과 공사채투자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투자법인은 자산을 주로 특정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운용회사가 증권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한 결과 발생한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기구이다.

1)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투자신탁(특정신탁 제외)은 수정된 도관으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투자자의 소득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투자신탁수익에 대한 과세의무는 투자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 발생하고 이를 투자자의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세를 결정하게 되어 투자신탁을 수정된 도관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신탁³⁶⁾은 법률상 신탁이지만 세법상 그 실질이 투자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처분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서 배당금을 공제해주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경우 투자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자의 소득으로 분류되며 간접투자기구 설립형태에 따라 공모주식투자신탁, 공사

35) 2009년 금융소득 일체화 이후 현재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태를 갖추게 됨.

36)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특정목적신탁과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투자신탁.

채투자신탁으로 구분하여 달리 과세한다. 투자신탁은 분배한 투자신탁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과세의무를 세무행정상 편의를 위해 투자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공모주식투자신탁(상장된 주식투자신탁은 제외)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경우 이는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투자법인은 20%(2008년 3월 말까지 상장된 증권투자신탁에서 배분한 수익분배금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공사채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분배한 경우 이는 투자자의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투자법인은 투자자가 지급받을 시점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일본에서는 일부 비과세제도가 인정되는 대상자의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는데, 비과세제도가 인정되는 대상자³⁷⁾가 주식의 편입비율이 70% 미만으로 투자한 법인의 발행주식(주식투자신탁³⁸⁾의 형태)을 5% 이하로 보유한 경우에 대해 신탁약관에 기재되어있는 투자신탁에서 분배하는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환(해약)으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투자신탁 종류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기준가액과 개별원본³⁹⁾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모주식투자신탁인 경우, 주식의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며 기준가액과 개별원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한 경우 상환(해약)금액의 투자금액 초과분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한다.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본의 처분손실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며 처분손실금액은 간주양도손실로 취급되어 다른 공모주식투자신탁이나 주식 등의 매각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공사채 투자신탁인 경우, 채권의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며 기준가액과 개별원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단,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한 경우

37) 65세 이상으로 유족·장애인 연금수급자, 모자 가정자 등.

38) 중기 국채펀드, MMF 등(이상 공사채 투자신탁) 및 운용기본방침에 '안정된 수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해 안정 운용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주식투자신탁만 해당됨.

39) 수익자마다의 구입단가를 세법상 원본으로 봄.

상환(해약)금액의 투자금액 초과분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금액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한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원본금액에 미달한 경우 원본의 처분손실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매입)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종류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기준가액과 개별원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모주식투자신탁인 경우,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금액의 투자금액 초과분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금액은 20%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한다. 이때 기준가액이 개별원본에 미달한 경우 원본의 양도손실로 보아 과세하지 않으며, 양도이익은 다른 공모주식투자신탁이나 주식 등의 매각손실(해약손실, 양도손실, 매입손실 포함)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채투자신탁인 경우, 자본이익은 비과세되며 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매입)손실은 양도(매입)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 투자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분받은 금액으로 과세하며, 투자신탁은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하여야 한다.

〈표 Ⅲ-5〉 일본 투자신탁의 과세제도

(단위: %)

구분		이자·배당		자본이득	
		세목	세율	세목	세율
공모주식 투자신탁	상환 시	배당소득세	20	양도소득세	20
	양도 시	배당소득세	20	양도소득세	20
공사채 투자신탁	상환 시	이자소득세	20	이자소득세	20
	양도 시	이자소득세	20	비과세	—

2) 투자법인의 과세제도

투자법인은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체가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도관성이 일부 인정되어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가 경감된다. 일정 요건⁴⁰⁾을 충족하는 투자법인인 경우 도관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배분한 지급배당금

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법인이 지분율 25% 이상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금 전액 익금불산입하며, 투자법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배당금의 50%만 익금불산입한다. 그리고 연결납세 제도가 적용될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한다. 투자법인이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투자자로부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투자법인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일본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배당공제를 적용한다.

투자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투자자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투자법인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분리과세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의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은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주식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40) 투자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관련 법에 의한 투자법인으로 관계 기관에 등록되어야 함.
- ② 투자회사의 설립 시점에 발행한 주식은 반드시 상장되어야 하고 공제된 주식가액은 100만 엔 이상이어야 함.
- ③ 투자회사는 자산을 하나 이상의 투자자문회사나 자산보관회사에 의해서 보관되고 운영되어야 함.
- ④ 일본 내에서 우선 주식이 발행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함.
- ⑤ 과세기간 종료시점에 가족회사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됨.
- ⑥ 세무상 처분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참고 4

일본의 금융소득 과세일체화 추진

- 2004년 일본 산업경제성 산하 세제조사회에서 ‘금융소득 과세일체화’에 대한 세제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가 추진됨.
 - 금융소득 과세일체화를 통해 금융상품 간 과세중립성 및 과세의 단순화·간소화를 추진하여 투자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꾀함.
- 금융소득 과세일체화는 과세방식의 균등화, 금융소득 간 손익통산범위 확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용함.
 - 과세방식의 균등화는 이자·배당 및 유가증권 양도 차익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20%로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주식 투자에 대한 손익을 통산하며, 주식과 채권, 주식 양도 손실과 배당, 채권이자 등의 소득을 모두 통산함.
 - 금융소득은 20%의 단일세율로 분리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용함.
- 일본의 금융소득일체화는 현재 상당부분 진행되어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소득 간 손익통산 역시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 4 의 계속

〈표 Ⅲ-6〉 금융소득 과세일체화(2009년) 이후 과세체계 변화 비교

구분	과세방식	
	과세일체화 반영 전	과세소득일체화 반영 후
이자소득	일률원천분리과세	일률원천분리과세
배당소득	종합과세 (원천분리과세 '03년 폐지)	상장주식 소액주주 신고분리과세 도입
주식거래세	존재	폐지
양도 소득	주식	'53년부터 원칙적으로 비과세 신고분리과세로 전환('89년)
	채권	공사채, 공사채투자신탁의 양도이익 종합과세 20%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파생	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 유지 '89년부터 주식과 동일하게 신고분리 소득과세 도입

자료: 금융투자협회(2012. 4), “자본이득과세 해외사례 조사보고” 재구성.

4. 소결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 과세시점,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 비용처리 등 대부분의 기준에서 볼 때 실체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특징 및 항목별로 살펴보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에 대한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수익을 포괄하며, 결산·분배에 따라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며, 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수료 등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며, 집합투자기구로 이익이 편입되는 시점이 과세 시점이 된다는 점 등이다. 일부 자본이득이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점과 최종 납세 주체가 투자자라는 점은 도관이론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타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도관이론적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장주식 등의 자본이득 및 손실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이다.

현재 집합투자기구 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집합투자기구 전체투자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 주식 매매차익(손) 등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과세대상 소득인 이자·배당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투자기구 전체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과세 제도는 실제이론적 과세논리 상으로도, 국민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체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장주식 매매차익(손)을 과세하지 않는 현재의 과세방식은 투자자로 하여금 세금을 내야 하는 배당보다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양도를 선호하게 하는 경제적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에 대한 해외사례(영국, 미국, 일본)를 살펴본 결과 금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이들 국가에서 자본이득(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까지 이월공제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국가들의 경우 주식거래세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⁴¹⁾

주식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의 의무가 발생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거래금 및 양도차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한 세 부담의 역진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0.15% 안팎인 증권사 거래수수료의 두 배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금융투자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과세 방법의 적절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주식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여 과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영국의 경우 주식거래세는 아니나 거래에 따른 인지세는 부과하고 1천 파운드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그리고 미국은 1965년, 일본 1999년, 독일 1991년, 스웨덴 1991년 과세 단순화 및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함.

참고 5 거래세와 자본이득과세 해외사례

〈표 Ⅲ-7〉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해외사례 정리

구분	거래세	자본이득과세
미국	연방과세 없음	종합과세 원칙, 일부 자본이득은 분리과세
일본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폐지 전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 채권의 경우 0.03%)	1989년 과세전환, 2003년 원천징수에서 신고분리과세 로 전환
독일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2009년 완전과세 전환(이전에는 1년 미만 보유 주식·채권만 과세) 분리과세와 종합신고 중 택일, 이자·배당소득을 25%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 채권양도차익 과세, 이월공제 허용
스웨덴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원래부터 과세되어 옴, 1991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영국	인지세 0.5% 부과 (단, 1,000파운드 이하 면세)	1962년부터 과세함, 신고분리과세, 자본이득세율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세율과 달리 과세, 채권양도차익과세, 자본손실이월공제, 기한 제한 없음

자료: 오윤·문성훈(2015),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IV. 보험상품과 세제

1. 현황

가. 보험의 종류

보험이란 공동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대수의 법칙에 의한 공동비축금을 마련하여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기술적 제도를 의미한다.⁴²⁾ 또한 보험계약은 위험에 처한 당사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3자 또는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그리고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의 분류와 보험계약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을 구성하는 참여자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 혹은 보험물건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수익자를 들 수 있다. 이때,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이익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대상이 구분되며,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의 구성에 따라 과세대상 및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1) 보험업법상 분류

보험업법상 보험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한다.⁴⁴⁾ 제3보험은 보험의 목적물(피보험자)이 물건이 아닌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의 특징이 있고 사

42) 양승규(2005), 『보험법』.

43) 보험경영연구회(2010), 「보험과 리스크 관리」.

44) 상법은 손해보험과 인(人)보험으로 분류하고 인(人)보험을 다시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이때 상해보험은 제3보험에 포함됨.

람의 생명이 아닌 손해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손해보험의 특징이 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없어지거나 손실되는 재산상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책임보험 등의 보험이 이에 속하며, 손해보험은 전보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을 따르는데, 이는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만약 손해 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경우 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은 계약자 본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만약 타인의 물건에 대해 보험이 가능하다면, 타인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피보험 물건)으로 하여 손실을 발생시키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만 판매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고, 생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 만기일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생사혼합보험이란, 보험기간 만기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일까지 생존 시 일정금액의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명보험 상품은 생명보험사만 판매할 수 있다.

제3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이라 할 수 있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인(人)보험을 의미한다.⁴⁵⁾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패질에 이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이다.⁴⁶⁾

45) 상법 제737조.

46) 양승규(2005), 『보험법』.

〈표 IV-1〉 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와 특징

구분	보험의 대상	소유권	보상방식	차익발생가능여부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	본인 또는 타인	생존·사망사고에 따라 보험금 지급	가능
손해보험	물건 혹은 재산	본인	손실이 발생한 만큼만 보상	불가능
상해보험	신체의 상해	본인 또는 타인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보상	불가능

2) 보험금부에 따른 분류

보장성보험이란 보험만기(혹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한다. 보장성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과 그 밖에 보장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순수보장성보험이란 보험만기(혹은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며,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한다.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한다.⁴⁷⁾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성은 위험보장기능과 저축·투자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작고, 저축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을 경우 만기에 보험이익이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보험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보험금을 5년 이상 기간에 걸쳐 매월 납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이익은 비과세된다.⁴⁸⁾

47)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

48)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즉,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⁴⁹⁾ 보험계약의 주체는 보험계약자(고객), 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 또는 재산, 그리고 보험자(보험회사)로 구성되며, 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 이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 한다. 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가 타인(예: 배우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을 피보험자(보험의 목적)로 하는 타인의 보험이 있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서상 보험을 수령하게 되어 있는 수익자가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그 사정여하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⁵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 기존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의 계약자 변경은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 물건은 동일하게 두되 계약자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⁵¹⁾

49) 상법 제638조.

50) 상법 제733조 제1항.

51)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제5호.

〈표 IV-2〉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보험

구분	피보험자	
	피보험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자기를 위한 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서 자기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서 타인의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자기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타인의 보험

자료: 손영철 외(2014).

다. 보험상품의 세제

1) 자기를 위한 보험

가)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만기보험금 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두 경우 모두 과세는 되지 않는다. 보장성보험은 만기 혹은 중도해약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의미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만기 혹은 중도 환급금 중에서 과세대상이 될 보험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시의 보험금은 전보보상의 원칙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을 받게 되므로 이를 위한 보험금 수령은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⁵²⁾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손해액-납입보험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손해보험은 전보보상원칙 적용으로 인해 보험금이 손해액을 넘지 못하므로 보험차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보험 보험금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보험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자 자신 혹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 원까지 세

5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참조.

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는 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공제 한도는 100만 원, 공제율 12%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나)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만기 혹은 중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계약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보험차익은 ‘보험금 - 총납입보험료’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험차익 계산 시 총납입보험료는 보험금 수취인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타인이 자기를 위해 납입해 준 보험료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과세 행정상 보험금의 경우 타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보험금 전체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로부터 발생한 보험차익은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⁵³⁾

전체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료 이외에 투자된 보험료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으로 투자가 가능하나, 과세 시에는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변액보험의 경우 역시 투자된 자금은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이로 부터 자본이득과 이자, 배당 등의 소득발생이 가능하나 이 역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투자된 보험금은 은행예금과 실질이 같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저축성보험상품의 경우 포트폴리오와 무관하게 예정이율에 따른 급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우 저축성보험의 경우 그 실질이 예금상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변액보험의 경우 그 실질 역시 펀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최저보증이율 등 변액보험상품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서의 특징에 더 많은 무게를 두어 과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성보험의 경우에서도 보험금이 만기 환급

53) 국세청, 「2001년 개정세법해설」.

형태가 아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형태로 지급될 경우 해당 보험금은 비과세한다. 생명보험 계약에서의 사망사고,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혹은 상해보험의 상해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은 전보적 보상원칙에 의한 손실의 원상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보험금이 주어지며 보험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또한, 중도 해지 혹은 만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보험금을 납입하고, 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령 시 이를 수령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인 경우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은 사망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고 지급된 보험금은 계약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자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금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⁵⁴⁾ 단,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납입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이 경우 일시 보험료 2억 이하 즉시연금이 이에 해당하며, 만기일과 보험금 지급기간이 모두 10년을 넘어야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며,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보험료를 5년 이상 매월 납입하는 월납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역시 비과세 조건에 해당한다. 종신행 연금보험으로부터의 보험금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⁵⁵⁾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에 관한 시발점은 산업화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본은 부족하나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역할이 미미했던 산업화 초기에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이 확대됨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는 1991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과세 초기 3년 이내 단기 보험의 보험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차츰 과세범위가 확

54)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55)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대되어 현재 10년 이상의 장기 보험만 비과세하고 있다. 현재도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하나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노후 장수리스크까지 책임지는 연금자산으로 연결되는 장기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의 장기 보유에 대한 비과세는 여타 업권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와는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시 과세는 상속 및 증여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개인인 경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였으나 보험사고(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계약자와 다른 수익자가 수령하는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이러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수익자의 보험금 수령에 대해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는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게 되므로 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세법은 실질을 중시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을 동일하게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⁵⁶⁾ 즉, 실질적으로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취하여 수익자에게 지급(상속 혹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금을 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수취하여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⁵⁷⁾ 이는 보험에 대한 권리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본인이 기여한 보험으로부터 얻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57)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는 급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 규정⁵⁸⁾하고 있는 상속 및 증여 간주 규정의 대상 보험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해보험금의 경우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수령하는 보험금이 전보보상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상해를 원상복구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므로 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타인)가 납부한 보험료와 수익자(본인)가 납부한 보험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과세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사실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존재하면 상증세법에 따라 타인의 납입비용에 따라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과세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저축성보험 등의 경우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타인이 대납한 경우에도 보험차익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나) 보험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법인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개인의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상증세법상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 금액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⁵⁹⁾

법인이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할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종업원 한사람당 보험료가 연 7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소

58) 상증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59) 상증세법 제34조.

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된다. 그러나 종업원 한사람당 연간 보험료가 7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업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보험이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해당 환급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법인의 근로자를 위해 계약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근로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의 보험차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입법과정을 통해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2. 이슈 및 문제점

본 절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험 관련 세제의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가.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은 13년간 100만 원에 머물러 있다.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은 1976년 연간 12만 원 한도로 시작되어 1978년 15만 원, 1979년 24만 원, 1992년 50만 원, 1999년 70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2002년 100만 원으로 인상된 후 2015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그리고 세제혜택 방식은 소득공제로 적용되어 오다가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보장성보험료의 한도는 2002년 1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 상한선은 13년간 동결되어 왔는데, 2002년의 100만 원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2015년 현재 144만 원이 되어야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의 실질적인 혜택은 100만 원으로 결정될 당시의 69%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의 수준을 물가상승(하락)률과 연계하여 지수화(indexing) 등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는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사회안전망의 대부분을 제공해 온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사회안전망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보장성보험을 통한 사적안전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은 선진국과 비교해 공적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적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적 사회안전망 제공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 생명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 과세 문제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으나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상속자에게 상속되며 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한 생명보험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사망 시 남은 가족이 1년 이내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조사⁶⁰⁾가 있을 만큼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주거를 위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감안하여 가장(家長) 사망 시 보험금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선에서 남은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사망보험금 상속에 대한 세제상 배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해외의 보험세제

본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개인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시 세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험세제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60) 라이나생명 블로그, “기획 설성엽의 ‘보험의 재발견’ – 정신적고통 VS. 경제적 고통지수”.

가. 영국

영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을 포함한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누어 각각의 범주별로 누진세를 적용하는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소득 등 비저축소득은 기본세율이 20~50%, 저축소득은 10~40%, 배당소득은 10~32.5%의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 보험을 수령할 경우 이는 저축소득으로 구분되어 보험금 및 기타 저축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된다.

〈표 IV-3〉 영국의 소득세구분 및 세율

(단위: £, %)

Rate	구간	비저축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
기본세율	0~31,785	20	20	10
고율세율	31,785~150,000	40	40	32.5
할증세율	150,000~	45	45	37.5

자료: Income tax rate and allowance(2015), HM Revenue & Custo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income-tax/income-tax-rates-and-allowances-current-and-past#personal-allowances>).

영국은 연금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차익(life policy gains)은 과세가능 사건(chargeable events)이 발생한 시점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여기서 과세가능 사건이란 함은 보험의 해약, 양도, 보험만기, 피보험자의 사망, 연금수령, 부분인출, 연금 일시금 수령 등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건을 칭한다. 과세 시기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과세 가능사건이 발생한 직후 혹은 보험연도 말에 보험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며, 보험차익은 기본적으로 ‘보험금-납입보험료’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투자성이 가미된 비적격보험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고율 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Top-slicing relief를 통해 납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⁶¹⁾ 여기서 Top-slicing relief 방식이란 보험차익을 보험계약이 경과한 연도로 나누어 연도별 수익으로 할당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61) HM Revenue&Customs(2014), Gains on UK life insurance policies, p. 18 참조.

적격 생명보험계약⁶²⁾에 대해서는 과세가능사건을 축소적용하여 10년 유지 시(혹은 계약기간 3/4 이상 기간 경과) 만기보험금이 비과세되는데, 이때 대상계약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생명보험으로 해지가치가 예정 총납입보험료의 75% 이상, 보험료 납입주기 1년 이하, 보험료 분산납입 부합 조건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 이러한 비과세 조건은 적격생명보험 계약이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⁶³⁾ 적격보험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수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가 동일한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 시 상속세를 부과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증여의 결과로 보아 자본이득세(증여세)로 과세한다. 단, 수익자가 계약자의 배우자일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⁶⁴⁾

나. 미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자·배당,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보험차익 역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미국은 종합과세 시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매해 결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해약 시점에 한 번에 과세하여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단, 특정한 종류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납세자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된 의료비(건강보험료 포함)는 조정 총소득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⁶⁵⁾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본인과

62) 생보사가 취급하는 사망이나 질병 보장이 포함된 10년 이상의 생명보험, 종신연금 등이 해당.

63) HM Revenue&Customs(2014), Gains on UK life insurance policies, p. 3.

64) 영국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heritance-tax/leaving-assets-spouse-civil-partner>).

65) IRS(<https://www.irs.gov/Individuals/Questions-and-Answers:-2013-Changes-to-the-Itemized-Deduction-for-Medical-Expenses>).

배우자 중 한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조정 총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건강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험계약 유지단계에는 세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적격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 수령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다. 비적격 보험인 경우 연간급부가 연간 보험료 납입액보다 클 경우 그 해 해약환급금 순증가액에 대해서는 매년 과세하고 있다.

보험금 수령단계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만기 혹은 해약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보험금(환급금) - 납입보험료’를 과표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중대질병에 의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와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부과 대상이 된다.

〈표 IV-4〉 세제적격 보험의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급부 종류	내용
사망보험금	비과세(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과세)
만기환급금	보험금 - 납입보험료 총액
중도해약·인출	해약환급금(또는 중도 인출금) - 기납입보험료
보험계약 타인 이전	보험금 - 매입금액(매입자에 과세)
배당금 수령	비과세
연간 보험적립금 증가	과세이연(단, 비적격보험은 매년 과세)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같은 경우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총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상속세 납부액은 총상속액에서 장례식비 등 공제항목 공제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속세 비과세의 예는 영국과 같다. 이는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부부가 함께 생성한 재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판단하며 상속세의 과세는 세대 간 상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보험금 수령 시 보험계약자

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수증자가 계약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보험사가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동등조건의 계약을 할 경우에 부과하는 일시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일본

일본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일시소득, 잡소득,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해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있다.⁶⁶⁾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으로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전액, 적격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최고 10만 엔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생명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로 구분하여 각각 5만 엔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격 생명보험 계약은 본인, 배우자, 친족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지칭하는데, 이때 생명보험이라도 보험기간 5년 미만 저축보험, 재형저축 관련 보험, 주택대출 포함 보험, 상해보험계약 등은 제외되어 세제혜택은 보장성 보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5〉 일본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방식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액
~25,000엔	전액
25,000엔~50,000엔	보험료×0.5 + 12,500엔
50,000엔~100,000엔	보험료×0.25 + 25,000엔
100,000엔~	50,000엔

자료: 국중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66) ‘Ⅲ. 해외의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일본사례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및 이원적 소득세제 참고.

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한 보험차익은 일시소득으로 과세하되, 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그 차익은 잡소득으로 과세한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일시 수령 시에는 발생한 보험차익의 절반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데, 이때 과세 대상 보험이익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와 특별공제 50만 엔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⁶⁷⁾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은 금융유사상품으로 취급하여 발생한 만기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소득과 같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는 보험이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하겠다.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자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사망보험금과 사망퇴직금에 대해서 법정상속인 한사람당 500만 엔을 과세대상 소득으로부터 공제한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기본공제 5,000만 엔에 추가로 복수의 법정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일인당 1,000만 엔까지 상속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공제 후 금액은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일본의 상속세 기초공제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는 고령층세대의 자산이 젊은 층으로 이전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⁶⁸⁾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루어진 보험계약의 증여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발생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으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표 IV-6〉 일본의 보험금 수령 시 상속·증여 세제

사례	예시			부과세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	A	A	B	상속세
계약자=수익자	A	B	A	소득세
계약자≠피보험자, 계약자≠수익자	A	B	C	증여세

67) 과세대상 소득=(만기보험금-납입보험료-특별공제 50만 엔)×1/2

68) 국중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4. 소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보험세제의 현황과 이슈 및 해외의 보험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보험세제의 개괄적 특징 및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외사례로 살펴본 국가들의 경우 보장성보험료에 관한 세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나 국가별 공적 사회안전망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보장성보험은 사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고 공적 사회안전망 역시 취약하나 재정적인 문제로 공적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 및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째, 저축성보험의 경우 편입되는 금융상품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10년 이상 장기저축 장려 및 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일본·영국 등의 해외사례에서도 과세이연, 연분연승법을 이용한 세금감면, 과세대상금액 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유사한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 자체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보험금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해외의 보험세제는 여러 부분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데, 먼저 우리나라처럼 보장성 조사대상 국가 중 보험료 납입단계에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이 있었다. 미국은 사적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부분이 취약한 사적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적보험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존재한다.

수령 시 보험세제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에는 모든 조사대상 국가에서 보험금 수령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사망보험금 등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보험금을 본인수령 시에는 비과세되나, 상속·증여 시에는 과세가 되는 우리나라의 보험금 수령단계 세제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미국, 영국, 일본 등 조사국의 상속세제에서는 상속자가 배우자인 경우 상속세를 면세해 주거나 혹은 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공제항목을 두어 사망 시 남아있는 가족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제상 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세제상 배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과세의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 보편성을 유지하되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는 많으나 확충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세제가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V. 연금과 세제

1. 현황

가. 우리나라 연금구성 체계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체계는 1층에 최소한의 노후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2층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노후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 노후에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급부가 더 많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회보장기능이 있는 공적사회보험 제도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며, 비경제활동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가입(임의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은 소득의 9%이며,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사회복지제도(사회보험)로서의 기능이 있어 일환으로 소득계층 간, 현재와 미래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한다. 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최저소득층의 경우 기여금 대비 수익비(=수령연금총액/기여금총액)는 4배로 최상위 소득층의 1.2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한다. 또한 최상위 소득층조차도 기여금 대비 1배 이상 연금급부를 수령하므로 부

족분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대 간 이전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충분한 인구 및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은 담보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쳐 하향 조정되었다. 시행 초기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던 국민연금의 목표소득대체율은 40%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적연금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고하고 있다.

2) 준공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되었으며 이는 사적기능에 의한 제도이나 정부정책에 의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이 의무화된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의무사항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적립·운용기관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사적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의무가입으로 인한 공적특징과, 운용기관이 금융기관이라는 사적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준공적연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적연금의 특성상 연금상품은 가입자의 납입금액 총합이 연금수령금액 총합과 일치하는 수지상등의 원리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된다.

퇴직연금에서 파생된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눌 수 있다.⁶⁹⁾⁷⁰⁾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은 IRP에 적립되며 이를 퇴직 IRP라 한다. 또한 기존 퇴직연

69)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기업 IRP가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퇴직 IRP와 적립 IRP를 포괄한 개인 IRP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함.

70) 개인 IRP를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누는 것은 법률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용어는 아니나 본고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금 가입자는 퇴직 이전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노후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적립 IRP라 한다. 기업형 IRP는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어려운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IRP를 개설하여 퇴직연금계좌 대신 이용하여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 IRP의 경우 세제는 DC형 퇴직연금의 세제와 유사하다.

〈표 V-1〉 IRP 구분

IRP 종류	세부구분	가입방법	적립금 원천	특징
개인형 IRP	퇴직 IRP	의무가입	고용주 부담	퇴직연금 연속성 제고
	적립 IRP	임의가입	가입자 부담	가입자 의사에 따른 퇴직연금 추가적립
기업형 IRP	기업 IRP	의무가입	고용주 부담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도입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는 공적·준공적연금과 달리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으로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의 경우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은행 상품의 경우 개인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상품의 경우 개인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의 경우 개인연금저축보험을 주로 판매한다.⁷¹⁾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은 동일하여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수령 시 원금을 포함한 수령액 전체에 과세한다.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의 경우(이하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보험상품은 보험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수령 시 역시 원금을 포함한 수령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한다.

71) 은행은 연금저축 신탁과 함께 연금저축 펀드 및 방카슈랑스를 통한 연금저축 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증권사 역시 연금저축 신탁을 취급할 수 있음.

나.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체계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연금세제는 적립기(혹은 납입기)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Exempt), 운용단계에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Exempt)하며, 연금수령 시 과세 (Taxation)하는 EET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적립기 세제의 경우 공적 혹은 준공적연금의 적립기 세제혜택은 연금적립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저축과 같이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연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령 시에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일정금액이 초과할 경우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적연금의 납입 시(기여 시) 납입금액에 대해 비과세, 적립금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나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한다. 기여금으로 납입된 부분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므로 과세 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기여금을 절반씩 부담하나 고용주 부담금은 비과세하며, 근로자 기여금은 소득공제를 통해 비과세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모든 기여금을 부담하며 납입한 기여금은 종합소득세 결정 과정에서 전액 소득공제하여 비과세된다. 적립금 운용 시 비과세되는 부분은 펀드 등의 금융상품이 보유 중 평가이익에 대해 결산을 통해 과세되는 것에 비교하여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공적연금은 펀드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과세누락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액의 3~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며, 종합소득세를 통한 과세가 납

세자에게 유리하다면 종합소득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퇴직연금 본인기여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수령액 및 여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다.

2) 준공적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하며 기업이 근로자의 계좌에 연금여의 일정 부분(연간 총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EET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에게는 비과세되며 회사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며, 적립된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이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및 연금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령 시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과세이연으로 인한 과세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수령 시에는 과세이연된 원금과 운용이익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퇴직연금적립금은 수령 시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는 퇴직소득이 일회성 소득이라는 점과 노후준비를 위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15년부터 퇴직연금 적립액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30% 감면되며, 결정된 세액은 연금수령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 납부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DC형 퇴직연금 혹은 본인의 IRP계좌에 임의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기여금과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본인 기여금의 경우 납입 시 12%의 세액공제를 받고, 적립금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되며, 수령 시 과세되는데, 연금수령연령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5%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15%)로 과세된다.

퇴직연금에서 파생된 IRP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위해 퇴

직연금의 사업주 부담금이 적립되어 있는 퇴직 IRP와 퇴직연금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를 목적으로 임의로 가입하는 적립 IRP로 구분할 수 있다.⁷²⁾ IRP의 적립금은 그 원천에 따라 수령 시 과세를 달리하는데 고용주 부담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며, 본인부담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표 V-2〉 퇴직연금 제도별 세제 비교

구분		DB형	DC형	개인형 IRP	
				퇴직 IRP	적립 IRP
납입주체		사용자(기업)	사용자(기업) 및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운용주체		사용자(기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불입한도		해당 없음	연금저축계좌와 합산 연 1,800만 원(퇴직금 제외)		
과세대상		퇴직금	퇴직금(기업) + 근로자 납입분 ¹⁾ + 운용수익	근로자 납입분 ¹⁾	
과세시점		55세 이후 퇴직 시			
세 제 혜 택	납입 시	—	근로자 납입분 연 700만 원 내 세액공제[12%(13.2%),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5%(16.5%)]		
	수령 시	—	사업주 기여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
		—	근로자 기여분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연 1,200만 원 한도)		
	요건	55세부터 5년 이상 수령 시 적용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사업주 기여분 퇴직소득세, 근로자 기여분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주: 1) 근로자 납입분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제외됨.

2)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3) 사적연금(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경우 EET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까지 납입 시 소득 공제 방식으로 과세이연이 이루어 졌으나, 2014년부터는 최대 400만 원까지 12%(연

72) 이는 근퇴법상에는 규정되지 않는 분류이나 실무를 반영한 용어를 사용함.

소득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적·준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운용 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수령 시에는 만기 이후 일시금 수령 시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며, 연금수령 시 3~5%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금액의 한도(연금수령한도)⁷³⁾가 존재하는데, 인정금액 이하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상회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리고 중도인출 및 해지 등 연금 외 수령 시 원칙적으로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⁷⁴⁾ 혹은 의료비로 인출 시 3~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한다.

당해 세제혜택을 초과하는 적립금의 경우 납입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만기 이후 수령 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인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만기 시 운용수익 1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700만 원이 되었다면,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을 받은 400만 원과 운용수익 1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2. 이슈 및 문제점

가. 연금세제의 복잡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연금세제는 공적연금과 준공적연금 그리고 완전한 사적연금으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납입 시 그리고 수령 시 세제가 모두 달라 그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공적연금은 연금과세 혹은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의

73)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74)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고용주 기여분은 수령형태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되며, 퇴직연금 및 IRP 본인 기여분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기 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 수령 시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데, 같은 임의가입형태에서도 개인연금과 IRP는 세제혜택과 중도인출 조건 등에서 차이가 난다. 사적연금의 연금수령 인정 조건 역시 ‘(전체적립액/(11-가입연수))×120%’의 형태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세제체계가 각기 다른 연금수요를 가진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연금가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다 보니 복잡하게 설계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연금세제는 세분화로 인한 이익보다는 복잡성으로 인한 불편함 및 제도이해도의 저해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세제의 단순화와 필요한 계층에 맞춤형으로 연금가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표 V-3〉 연금세제

연금분류	연금종류	가입형태	과세방식	비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의무가입	종합소득세	—
퇴직연금	DC, DB, 퇴직 IRP	의무가입	퇴직소득세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적립 IRP	임의가입	연금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과세 (세율 15%)
개인연금	연금저축	임의가입	연금소득세	

나. 세액공제의 문제점

정부는 2014년부터 연금저축 납입 시 과세이연방식을 소득공제에서 공제율 12%의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인해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은 세제혜택이 줄어들고,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은 세제혜택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유인 제고 측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의 의도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주요 수요층이 중산층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한계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중산층의 연금가입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연금저축 신규가입건수 및 가입액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개인연금저축은 3층 연금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고 주요 대상자는 중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개인 연금저축의 주요 수요층인 중상위 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동기가 12%의 세액공제율 적용의 영향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연구⁷⁵⁾에서 이미 예측된 것처럼 세액공제로 전환이 연금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입증대에는 효과가 적은 반면,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연금가입유인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 근로자 소득계층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

(단위: 만 원, %)

구분	~2,000		2,000~4,000		4,000~6,000		6,000~8,000		8,000~10,000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가입률	평균 납입액
2011	2.8	158	25.0	221	47.4	270	60.8	291	68.8	315
2012	3.1	164	24.5	226	47.6	278	61.9	299	70.6	321
2013	2.8	181	22.0	229	45.9	279	61.1	303	70.4	324
2014	1.9	102	17.5	208	43.3	275	58.6	301	69.0	320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정원석(2016),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와 시사점」.

세액공제 방식은 연금가입의 효과성 측면뿐만 아니라 과세 논리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적용 중인 EET 과세 방식은 납입 및 운용 시 비과세하고 비과세된 소득을 수령 시 과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감면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입 시 과세된 부분에 대해 수령 시 다시 한 번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EET 방식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75) 정원석·강성호(2015a).

다. 이중과세 문제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한 현재 연금세제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공제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결정한 다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더라도 연금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없으나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이 10만 원으로 결정되고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48만 원 인 경우 결정세액 10만 원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연금 납입 시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과세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중과세의 대상이 면세점 이하이거나 산출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이라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라. 세제혜택의 한계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과세이연 혹은 세(稅)부담 감소를 통해 연금 가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48%가 면세점 이하자라는 현실은 세제혜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가입유인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 해외의 연금세제

가. 영국

1) 공적연금의 과세제도

가) 공적연금제도

① 기초국가연금(BSP: Basic State Pension)

영국의 공적연금은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1층 기초국가연금(BSP: Basic State Pension)과 2층 제2국가연금(S2P: State Second P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국가연금(BSP)의 의무가입대상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이며, 노령·유족·장애에 대한 연금 급여 지급을 통해 기초소득을 보장해주고 있고, 2층을 구성하는 있는 제2국가연금(S2P)의 의무가입대상자는 근로자이며 퇴직 후에도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국가연금(BSP)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NIC: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NSP) 가입대상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종은 근로자, 2종은 저소득자영업자, 3종은 자발적 가입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외국거주자, 4종은 고소득자영업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1종 근로자는 주당 소득이 155파운드에서 815파운드 사이의 소득인 경우로 보험료율 12%가 적용되며, 주당 소득이 815파운드 이상인 경우 815파운드 초과분에 대하여 2%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종 저소득자영업자는 연 소득이 5,965파운드 이상인 경우 주당 2.80파운드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3종의 경우 자발적 가입자로서 주당 2.80파운드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4종 고소득자영업자는 연 소득이 8,060파운드에서 42,385파운드 사이인 경우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42,385파운드 이상의 소득인 경우 42,385파운드 초과분에 대하여 2%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표 V-5〉 국민연금(NIC) 유형별 보험료율(2015. 4. 6~2016. 4. 5)

구분		소득수준	사용자
1종 (Class 1)	사용자	주 £156 초과	13.8%
		적용제외방식 ⁷⁶⁾ (Contracted-out pension schemes)에 의한 환급률	3.4%
		금전매입방식(Money-purchase schemes)에 의한 환급률	—
	근로자	주 £155 미만	보험료 납부 제외
		주 £155~£815	12%
		주 £815 초과	초과소득의 2%
		적용제외방식(Contracted-out pension schemes)에 의한 환급률	1.4%
2종 (Class 2)	저소득 자영업자	연 £5,965 미만	주 £2.80
3종 (Class 3)	자발적 가입자	—	주 £5.60
4종 (Class 4)	고소득 자영업자	연 £8,060~£42,385	9%
		연 £42,385 초과	초과소득의 2%

자료: <http://www.gov.uk>.

기초국가연금(BSP)의 가입의무자는 16세 이상 65세(여성 60세) 미만인 자로 국민연금 기여기간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진다.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같은 연금급여액을 수령하게 되어 재분배 기능이 있으며, 질병, 장애, 실업상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크레딧 제도를 통해 기여기간을 인정해줌으로써 기초연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국가연금(BSP)의 급여는 30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완전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금액은 주당 최대 115.95파운드(2015년 기준)인데, 과거에는 남성의 경우 44년, 여성의 경우 39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완전연금의 수령이 가능했으나 2011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완전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기간이 남녀 모두 동일하게 30년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결혼 또는 동성혼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완

76) 적용제외(Contraction-Out)란 제2국가연금에 상응하는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에 가입하는 경우 제2국가연금 가입 면제가 가능함을 뜻함.

전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기여기간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수령자격이 주어지며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69.50파운드를 추가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시 연금급여는 평균 임금소득 상승률, 물가상승률(CPI), 2.5% 중 가장 높은 것과 연동되어 지급된다. 기초국가연금(BSP)의 수급개시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세이나 2018년부터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0년에는 60세, 2026년에는 남녀 모두 67세로 상향조정된다.

기초국가연금제도는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 Pen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세의 성격이 강해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국세청 내에는 국민연금국(NICO: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Office)이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② 제2국가연금(S2P: State Second Pension)

제2국가연금(S2P)은 기초국가연금에 부가하여 운영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사적 연금가입이 불가피한 계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보충해 주는 연금이다. 저 소득일수록 혜택을 증가되도록 설계되어 기초국가연금과는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 역할을 한다.

제2국가연금(S2P)은 일정요건⁷⁷⁾을 충족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가입자는 기초국가연금에 부가하여 가입하므로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단, 연간 소득 5,824파운드(2015년 기준)에 못 미치거나 자영업자, 실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초국가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용제외방식(Contracted-out pension schemes)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주당 155파운드와 815파운드 사이의 소득에 대하여 1.4%의 기여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2국가연금(S2P) 급여에 적용되는 발생이율(accrual rate)은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2단계로 간소화되었었는데, 1단계는 연 소득이 5,772파운드와 15,100파운

77) ① 소득이 연간 5,824파운드(2015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②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한 경우, ③ 주당 20시간 이상 아픈 사람이나 장애인을 돌본 경우, ④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급여를 받은 경우.

드(2015년 기준)인 경우 92.0파운드의 고정적인 발생이율을 지급하며, 2단계는 연 소득이 15,100파운드와 40,040파운드 사이인 경우 10%의 발생이율을 적용한다.⁷⁸⁾ 뿐만 아니라 기초국가연금과 같이 크레딧제도를 통해 기여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제2국가연금(S2P)은 기초국가연금(BSP)과 같이 고용연금부(Department of Work & Pension)에서 담당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과세제도

영국의 공적연금은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 안에서 함께 운용되므로 기여금은 사회보장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적용제외제도를 두어 연금 간에 유기적 연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방식은 납부·운용단계에서 세제혜택(소득공제)을 부여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납입 단계

기초국가연금(BSP)과 제2국가연금(S2P)의 재원은 국민연금(NIC) 기금과 함께 운용되므로 사용자의 기여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여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② 운용 및 수령단계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수령단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급여는 세법상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시 방법은 개인이 공적연금 급여를 수령한 경우 이를 납세의 무자의 총소득에 포함시키고 세법상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순소득을 산출하여 저축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저축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78) 2012년 4월 6일 이전에는 1단계에서 소득의 40%를 발생이율로 적용하였으며 2단계에서 소득의 10%를 발생이율로 적용하였음. 이는 중·장기적으로 정액급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였음을 나타냄.

〈표 V-6〉 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2015. 4. 6~2016. 4. 5)

(단위: £, %)

Tax Band	연 소득금액	세율
Starting rate	2,880 이하	10
Basic rate	2,880~31,865	20
Higher rate	31,865~150,000	40
Additional rate	150,000 이상	45

자료: HM Treasury, Policy paper(2015).

2)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가) 퇴직연금제도

①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Salary-related Schemes)은 강제성을 띤 퇴직연금으로 2007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자동가입되며 희망자에 한해서 적용제외(contracting-out) 방식을 인정받는다. 이때 확정급여형(DB) 기업연금이 적용제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2국가연금(S2P)보다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기여금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분담하여 납입하며 연금 급부는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급여방식(Final salary schemes)과 평균급여방식(Average salary scheme)으로 구분한다. 최종급여방식은 최종급여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경우 최종급여에 근속년수와 1/60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속년수에 1/80을 곱하여 산정한다. 반면, 평균급여방식은 최종급여 대신 생애평균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확정기여형(DC) 기업연금

확정기여(DC)형 기업연금(Money Purchase Schemes)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금계좌에 기여금을 납부하여 운용하는 방식이다.

③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NEST는 퇴직연금 가입의 활성화와 사각지대에 있는 중·저소득층과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자동가입 형태를 띠고 있다. 자동가입이란 2008년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2012년 10월부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탈퇴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가입(Auto-enrolment)이 이루어지는 퇴직연금 가입 형태를 말한다. 22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00파운드(2015년 기준) 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22세 미만이거나 연소득이 5,824파운드(2015년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NEST 가입을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특정 근로자(신규입사자, 계절노동자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자동가입이 아닌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NEST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NEST는 확정기여형(DC)방식으로 운영하며 매년 적립해야 하는 최소기여율(Minimum contribution)이 있으며, 최소기여율은 전 소득이 아닌 적정범위소득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15년 기준 연 5,824파운드와 42,38파운드(2015년 기준) 사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NEST 기여금의 연간최대기여한도는 4,600파운드(2015년 기준)이고 근로자는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일정부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표 V-7〉 NEST 자동등록제도 및 최소기여율 확대시행 일정

시기	규모	기여율
2012. 10~2013. 2	250인 이상	2%(사용자: 1%, 근로자: 0.8%)
2014. 4~2015. 4	50인~249인	
2015. 8~2015. 10	30인~49인	
2016. 1~2017. 4	30인 이하	
2017. 10~2018. 10	—	5%(사용자: 2%, 근로자: 2.4%)
2018. 10 이후	—	8%(사용자: 3%, 근로자: 4%)

주: 기여율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은 소득공제비율임.

자료: NEST Corp.

NEST는 확정급여형(DC)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NEST의 급여 수준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NEST 제도의 운영은 독립적인 공적기관인 NEST Corpo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수탁주체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NEST는 비영리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매회 납부하는 기여금의 1.8%, 매년 관리비용은 총 적립금의 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중도에 이직할 경우 직장에 관계없이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직 후 발생한 기여금은 동일한 계좌에 추가 납부할 수 있어 관리 및 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④ 그 외 자발적인 퇴직연금

강제성을 띤 DB형 기업연금과 NEST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추가임의기여제도(AVCs: 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와 독립된 추가임의기여제도(FSAVC: free-standing AVC)가 있다. 이는 기업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 연액을 늘리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는 1986년 APP(Appropriate Personal Pension)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실업자 등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인연금은 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제공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연금(Stakeholder Pension Plans)은 기존 개인연금보다 수수료를 낮추어 저소득층 근로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① 이해당사자연금(Stakeholder Pension Plans)

이해당사자연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수수료는 기존 개인연금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연금의 연간 운용수수료의 상한을 가입자 개인별 적립기금을 기준으로 1% 이내로 정하고 있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납입·중지할 수 있으며 다른 연금상품으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급여는 확정기여(DC)방식으로 자산운용 성과를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연금크레딧은 연금수급자들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크게 Guarantee Credit과 Saving Credit으로 나눌 수 있다. Guarantee Credit은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Guarantee Credit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독신인 경우 주당 151.20파운드, 부부인 경우 주당 230.85파운드까지 소득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며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Saving Credit은 65세 이상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015년 기준으로 독신인 경우 주당 14.82파운드, 부부인 경우 주당 17.43파운드까지 소득을 국가에서 지급한다. 이 외에도 Winter fuel payment, cold weather payment 등 다양한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다) 과세제도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과세체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 소득세율로 과세하며 연금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① 납입 단계

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연금 기여금은 손금산입되고 근로자의 기여금은 소득공제되나 납부한 기여금이 일정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제한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간 납입한 기여금이 3,600파운드에 못 미치는 경우 기본공제액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3,600파운드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한도(Annual Allowance) 40,000

파운드(2015년 기준), 평생한도(Lifetime Allowance)는 1,250,000파운드(2015년 기준)이다. 단, 초과납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은 매년 변경되는데 255,000파운드였던 연간한도는 2011년 50,000파운드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연간한도가 10,000파운드, 평생한도가 1,000,000파운드로 감소할 예정이다.

공제한도를 넘는 기여금은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예외적으로 3년 내에 공제한도를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납부한 기여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되며 기여금을 과도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운영 및 수령단계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EET 방식)에 과세한다. 통상적으로 연금소득은 Schedule D의 6가지 사업형태 중 연금소득(interest, annuities and other annual payments)에서 과세되나 비거주자의 연금소득 등 일부 연금소득은 Schedule E의 근로소득세로 과세된다.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한 경우 연금 급여액은 저축, 비저축,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다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액은 납세의무자의 총소득에 포함시키고 세법상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순소득을 산출하여 저축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저축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8〉 저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2015. 4. 6~2016. 4. 5)

(단위: £, %)

Tax Band	연 소득금액	세율
Basic rate	31,785 이하	20
Higher rate	31,785~150,000	40
Additional rate	150,000 이상	45

자료: Ross Martin Tax Consultancy.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의 25%는 면세(Tax-free lump sum)가 가능하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최대 55%의 세율로 과세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인 55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55%의 고세율이 부과된다.

나. 미국

1) 공적연금의 과세제도

미국은 사회보험에 기초하여 국내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노인·유족·장애보험제도(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를 운영하고 있다. OASDI는 사용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12.4%(2015년 기준)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청징수하여 납부한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소득 상한액은 전국평균임금 지수(National Average Wage Index) 변동률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결정되며, 2014년도의 상한소득액은 118,500달러이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가족급여, 고령자 특별급여,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기본연금액은 근로자의 매년도 소득을 기준연도의 가치로 재평가하고, 근로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이를 급여산정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한다. 또한 기본 연금액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산정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 납입 단계

사용자가 공적연금에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며 근로자가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므로 부담금의 절반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나) 운용 및 수령 단계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운용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수령 시 공적연금 이외에 다른 급여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사망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타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아니한다. 공적연금 급여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소득액(Provisional income)이 기준금액(Base amount)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추계소득은 공적연금 급여의 50%와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소득을 말하며, 기준소득은 공적연금 급여의 과세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소득으로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신자, 세대주, 적격미망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25,000달러이고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에는 32,000달러, 기혼 단독신고인 경우에는 0달러이다. 추계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 급여액의 50%에 대해 과세한다. 단, 급여의 50%와 다른 소득의 합계가 34,000달러(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44,000달러)이거나 기혼단독신고인 경우에는 급여의 85%를 근로자의 총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적연금 관리기관에서 연금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통해 신고의무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완납적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금액에 따라 7%, 10%, 15%,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퇴직연금의 과세제도

가) 퇴직연금의 종류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한 적격퇴직연금의 경우 미국세법상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적격퇴직연금에는 직역연금,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s), 금전구입제도(Money Purchase

Plans),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s) 등을 포함하며 직역연금에는 401(K)연금,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SEPs: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 소상공인을 위한 저축연금(SIMPLE: Saving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 주정부·지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인 457연금, 비영리단체 근로자를 위한 연금 403(b)연금, 기업연금(occupation pension), 우리사주조합기금(ESOPs: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등이 있다.

직역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을 부담하는 수준에 따라 사용자가 전액 기여금을 부담하는 형태(Non-Contributory Pension Plan)와 근로자가 일부 기여금을 부담하는 형태(Contributory Pension Plan)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근로자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lan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s)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연금제도는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미래에 수령하게 될 근로자의 연금급여액은 근무연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공식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금급여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에 설정된 신탁에 회사의 이익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금액의 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확정 미지급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퇴직연금보험공사(Pension Benefit Guranty Corporation)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보통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발생급부의 100%를 수령(일시 수급권 부여, cliff vesting schedule)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혹은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발생급부를 3~7년에 걸쳐 20%씩 단계적으로 부여(단계별 수급권 부여, graded vesting schedule)받을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는 미래에 수령하게 될 근로자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지 않아 기금운용의 투자위험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 스스로가 투자성향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투자결정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전 직장의 연금 수급권을 개인 계정으로 이전(rollover)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에 따라 401(k)연금,

457연금, 403(b)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급여는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중 선택 가능하다.

401(k)연금은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퇴직연금으로 이익분배제도, 주식상여제도 등과 결합할 수 있으며 일정한도 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401(k) 연금은 근로자가 급여 수령 시 일정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후자를 선택적 이연(Elective deferral)이라고 칭한다.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발생급부의 100%를 수령(일시 수급권 부여, cliff vesting schedule)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또는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발생급부를 2~6년에 걸쳐 20%씩 단계적으로 부여(단계별 수급권 부여, graded vesting schedule)받을 수도 있다.

나) 납입 단계

① 확정급여형(DB) 연금

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 사용자의 부담금이 완전적립금⁷⁹⁾ 한도(full funding limitation)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다.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징벌적 세금(exercise) 명목으로 한도초과출연금이 소멸할 때까지 초과금액의 10%를 부과한다. 그리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금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79) 당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함. 여기서 연금 급여액은 근로자의 3년 연속 최고 평균 급여액과 210,000달러(2015년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② 확정기여형(DC) 연금

확정기여형 연금에 적립할 수 있는 부담금의 한도⁸⁰⁾는 근로자 총급여(최대 265,000달러, 2015년 기준)의 100%와 53,000달러(2015년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용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근로자 총급여(최대 265,000달러)의 25%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한도초과출연금이 소멸할 때까지 매년 1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 근로자가 401(k)연금과 결합한 경우 근로자의 부담금도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선택적 이연을 선택한 경우 해당 이연금액은 소득공제되어 납입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의 근로자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이연금액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최대 265,000달러)의 25%와 18,000달러(2015년 기준) 중 적은금액으로 한다. 또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선택적 이연금액 외에도 6,000달러(2015년 기준)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근로자는 특정경우에 한하여 조기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59.5세 이전 인출 시 소득세 이외에 1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택적 이연에 대하여 매칭연금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을 추가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매칭연금부담금의 한도는 근로자 총급여(최대 265,000달러)의 100%와 35,000달러(53,000달러 - 18,000달러) 중 적은 금액이며 대체적으로 근로자 부담금의 3~6% 수준으로 추가 납부한다.

다) 운용 및 수령 단계

① 연금 수령 시

확정급여형(DB) 연금의 경우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완전적립금(full funding) 범위 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DC) 연금의 경우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수익은 모두 비과세된다.

수령 시 세제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수령

80) 연금 적립금 한도액은 사용자분과 근로자분을 합한 금액임.

하는 급여(benefit)에서 원금(cost)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한 후 총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표 V-9〉 유형별 개인소득세율(2015년)

(단위: \$, %)

단독신고	부부합산신고	세대주신고	세율
9,225 이하	18,450 이하	13,150 이하	10.0
9,226~37,450	18,451~74,900	13,151~50,200	15.0
37,451~90,750	74,901~151,200	50,201~129,600	25.0
90,751~189,300	151,201~230,450	129,601~209,850	28.0
189,301~411,500	230,451~411,500	209,851~411,500	33.0
411,501~413,200	411,501~464,850	411,501~439,000	35.0
413,200 이상	464,850 이상	439,000 이상	39.6

자료: <http://www.jhinvestments.com>.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일반법(General Method)과 간편법(Simplified Method)이 있다. 일반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납입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후소득으로 납입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 적립금을 근로자의 순투자 원금액으로 보고 연금급여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순투자 원금액은 과세제외비율(예상수익 대비 투자금액)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1996년 11월 19일 이후 개시되는 적격연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75세 미만이거나 지급보증 연금수급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법을 적용하며 이때에도 순투자 원금액을 연금급여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한다. 순투자 원금액은 투자금액을 연금 가입자 나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예상연금수령횟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연금 외 수령 시

연금과 같은 정기급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소득을 총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나 근로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방식의 차이가 있다. 1936년 1월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가 일시금(lump-sum distribution)을 수령하는 경우 10년 연분연승법(10-year tax option)이나 20%의 자본소득세를 선

택할 수 있다. 연금개시일 이전 세제적격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지급액에 과세제외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서 과세제외금액은 비정기급여 총수령액에서 연금계정 잔고 대비 원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연금개시일 이전 세제비적격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에서 과세대상 금액을 직접적으로 산출한다. 과세대상금액은 비정기적 급여와 비정기적 급여를 수령하기 직전의 순투자금액을 초과하는 적립금의 현재가치 중 적은 금액이 된다.

3)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가) 개인연금의 종류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연금 중 하나인 개인퇴직계좌(IRA)는 사용자 지원을 받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개인퇴직계좌의 종류로는 전통적 개인퇴직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개인퇴직계좌(Roth IRA),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 등이 있다. Traditional IRA는 납부·운용단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수령단계에서 과세(EET)하며 59.5세 이전에 적립금 또는 수익금을 조기 인출할 경우 특별한 사유⁸¹⁾를 제외하고는 10%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한다. 70.5세부터는 최소금액에 대한 강제 인출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있어 70.5세가 되는 해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 그 이후로는 12월 31일까지 연금을 인출해야 한다.

Roth IRA는 납부단계에서 과세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TEE)해주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연령제한이 없으며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중상위층 이상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Roth IRA는 70.5세 이후에도 추가적인 적립금 불입이 가능하며 최소금액강제인출규정(RMD)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밖에도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하여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81) 계좌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이 생긴 경우, 해직 등의 이유로 조기인출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사용될 경우, 대학 학비 등 고등교육비로 사용될 경우, 첫 번째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법이 규정하는 대로 동일한 액수의 정기적 인출계획에 따를 경우, 60일 내 같은 은퇴플랜으로 옮길 경우(롤오버) 등.

IRA,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가 있다. SEP IRA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자신의 연금플랜과 동일한 비율로 부담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적립할 수는 없다. 주로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입하는 SIMPLE IRA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연소득의 일정비율을 매칭하여 부담금을 적립해 준다.

나) 납부 단계

전통적 IRA는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신고유형에 따라 소득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부담금은 최대 5,500달러(2015년 기준)이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500달러(2015년 기준)이다. 다른 퇴직연금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기준이 더 엄격해지며 신고유형에 따른 적립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V-10〉 Traditional IRA의 적립한도

구분		수정총소득 (Modified AGI) ⁸²⁾	적립 한도
퇴직연금 제도 가입 시	독신, 세대주	\$61,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61,000~\$71,000	부분 소득공제
		\$71,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부부합산신고, 적격미망인	\$98,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98,000~\$118,000	부분 소득공제
		\$118,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부부단독신고	\$10,000 이하	부분 소득공제
		\$10,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 시	독신, 세대주, 적격미망인	제한 없음	\$5,500(50세 이상, \$6,500)
	부부합산신고, 부부단독 (배우자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	제한 없음	\$5,500(50세 이상, \$6,500)
	부부합산신고 (배우자 퇴직연금 제도 가입)	\$183,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183,000~\$193,000	부분 소득공제
		\$193,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부부단독신고 (배우자 퇴직연금 제도 가입)	\$10,000 이하	부분 소득공제
		\$10,000 이상	소득공제 불가능함

자료: Saving-invest(2015).

Roth IRA의 경우 Traditional IRA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적립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적립한도액은 동일한 수준이다. 즉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부담금은 5,500달러(50세 이상, 6,500달러)이며 소득수준의 차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11〉 Roth IRA의 적립한도

구분	수정총소득(Modified AGI)	적립 한도
부부합산신고, 적격미망인	\$183,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183,000~\$193,000	적립한도 감소
	\$193,000 이상	적립 불가능
독신, 세대주	\$116,000 이하	\$5,500(50세 이상, \$6,500)
	\$116,000~\$131,000	적립한도 감소
	\$131,000 이상	적립 불가능
부부단독신고	\$10,000 이하	적립한도 감소
	\$10,000 이상	적립 불가능

자료: Saving-invest(2015).

SEP IRA에 적립할 수 있는 부담금의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최소 600달러, 최대 265,000달러, 2015년 기준)의 250%와 53,000달러(2015년 기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SIMPLE IRA에 적립할 수 있는 부담금의 한도는 12,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3,000달러를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연소득의 일정비율을 매칭하여 적립하며 매칭연금부담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인 경우에는 총급여의 3%, 비선택적연금부담금(non-elective contribution)인 경우에는 총급여의 2%를 추가적으로 적립한다.

다) 운용·수령 단계

수령 및 운용단계는 퇴직연금 과세제도에서 소개한 내용과 동일하며 Roth IRA의 경우에만 납입단계에서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수령한 급부에 대해서는 비과세된

82) 수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란 총소득에서 항목별 공제 후 산출된 조정총소득에 비과세 이자소득, 사회보장급여 등을 가감한 소득을 말함.

다. 수령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0일 내에 다른 적격연금이나 IRA 계좌로 이전(Rollover)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단, 10년 이상 매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로자가 70.5세에 도달하여 최소 연금 급여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수령하거나, 401(k) 제도의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초과금을 돌려받는 경우 등에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일본

1) 연금제도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층 구조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러 번의 개혁과 조정을 통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층은 기초연금, 2층은 후생연금보험 및 특수직역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 3층은 자발적 가입에 의한 기업연금(후생연금기금, 확정급여기업연금, 적격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별 없이 적용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1층과 2층은 공적연금, 3층은 사적연금이라 부른다.

가) 공적연금제도

①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입유형은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제1호, 제2호, 제3호 피보험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제1호 피보험자는 국내에 거주(외국인 포함)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써 다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제2호 피보험자는 피용자연금제도에 관한 개별법상의 피보험자, 조합원 또는 가입자이다. 마지막으로 제3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만약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피용자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국

민인 경우에는 제1호 피보험자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각 유형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기여금)와 급부수준이 다르며 후생연금 보험료는 기초연금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와 급부는 정액으로 매년 물가와 임금수준에 따라 조정된다. 2015년 기준 기초연금 보험료는 월 15,590엔이며 저소득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제2호 피보험자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후생연금 보험료만을 납부하며 여기에 기초연금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급부는 표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제3호 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다.

제1호와 제3호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급부는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며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이라 한다.⁸³⁾ 노령기초연금 보험료를 10년(2015년 이전에는 25년 이상) 이상 납부한 경우 수급권이 생기며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노령기초연금액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780,100엔(2015년 기준)이며, 이때 납부기간 48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수령하거나 65세 이전에 조기수령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감액되어 지급한다. 장애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가입 기간 중 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 납부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수령가능하다. 2015년 기준 장애기초연금액은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975,100엔, 2급 판정을 받은 경우 780,100엔을 지급한다. 유족기초연금은 기초연금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함께하고 있던 유족(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이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단,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유족기초연금액은 아이가 1명인 배우자의 경우 1,004,600엔(2015년 기준)을 수령 가능하다.

제1호 피보험자에 대한 독자급부로 부가연금, 과부연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부가연금은 정액 보험료 외에 부가 보험료(400엔, 2015년 기준)를 추가로 납입한 경우 노령기초연금에 더하여 부가연금(200엔×부가 보험료 납부 월수)을 수령할 수 있다.

83) 일본연금청(<https://www.nenkin.go.jp>).

과부연금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한 남편(피보험자)이 65세 이전에 노령기초연금이나 장애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60세부터 65세까지 노령기초연금의 3/4인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이다. 사망일시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36개월 이상인 남편(피보험자)이 65세 이전에 노령기초연금이나 장애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납부기간에 따라 120,000~320,000엔 수준)으로 과부연금과 택일이 가능하다.

제2호 피보험자에게는 지급되는 급부에는 기초연금에 더하여 노령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 및 장애수당금, 유족후생연금이 있다. 그 외에도 보험료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국내 주소를 소유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탈퇴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탈퇴 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월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다.

〈표 V-12〉 탈퇴 일시금(2015년 기준)

(단위: 엔)

보험료 납부완료기간의 합계	지급액
5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6,77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93,54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40,31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187,08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33,850
36개월 이상	280,620

주: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전액 납부 월수+(4분의 1 납부 월수)×1/4+(반액 납부 월수)×1/2
+(4분의 3 납부 월수)×3/4

자료: 일본연금청.

②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보험은 후생연금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상시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70세 미만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피보험자(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표준보수월액의 17.474%(2015년 4월 기준) 수준이다.

후생연금의 급부에는 노령후생연금, 장애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이 있다. 노령후생연금은 피보험자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을 만족한 경우 수령가능하며 급부는 전 기간 평균표준보수액에 급부승률과 가입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장애후생연금은 장애기초연금보다 장애요건을 더 넓게 적용하여 3급 장애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유족후생연금은 후생연금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연금액은 노령후생연금의 3/4 수준이다.

기초연금과 같이 보험료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격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인은 국내 주소를 소유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탈퇴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탈퇴 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월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다.

〈표 V-13〉 탈퇴 일시금(2014년 4월 이후 기준)

피보험자 기간	지급액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0.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1.5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2.1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평균표준보수액×2.6
36개월 이상	평균표준보수액×3.1

주: 평균표준보수액 = 피보험자 기간의 각 월 표준보수월액과 표준 상여액의 합계/피보험자 기간의 전체 월 수
자료: 일본연금청.

나) 사적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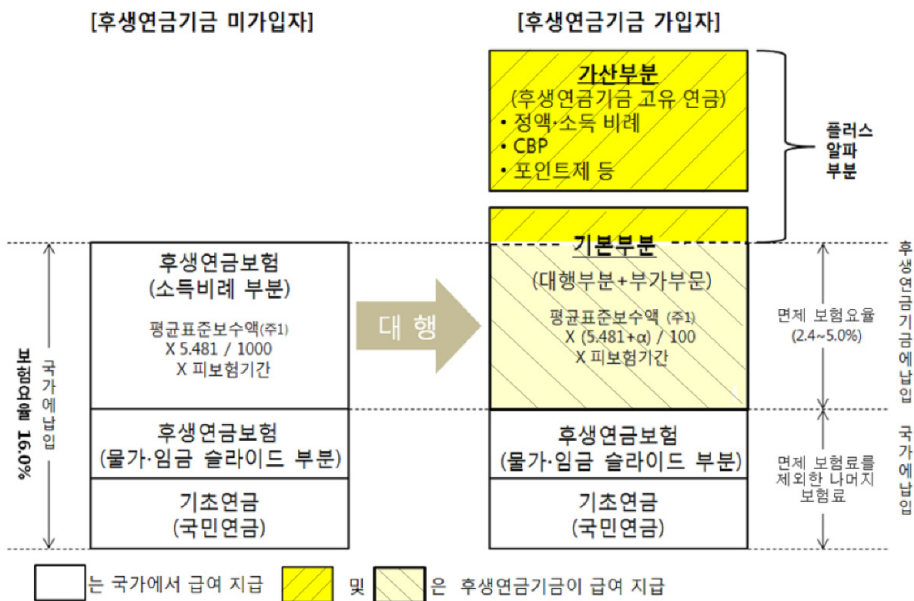
① 후생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중복 조정을 위해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로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대행제도)하여 소득비례 공적연금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단독

형은 500명, 중소기업 등이 통합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가산부분(플러스 알파)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업이 플러스 알파를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면제보험료의 50% 이상 유지되는 범위에서 부담비용을 조정가능하다. 따라서 2.4~5%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주가 균등부담할 수 있다.

후생연금기금의 특징 중 하나인 대행제도(contraction-out)는 기업이 대행부분의 50% 이상을 설계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플러스 알파를 적립하는 형태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후생연금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동 기금이 후생연금보험부분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생연금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즉, 후생연금보험(소득비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금이 대신하여 급부를 지급하며 후생보험에서는 이 부분만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기업은 대행급부 외에 플러스 알파부분을 10% 이상 설계하여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그림 V-1〉 후생연금기금 운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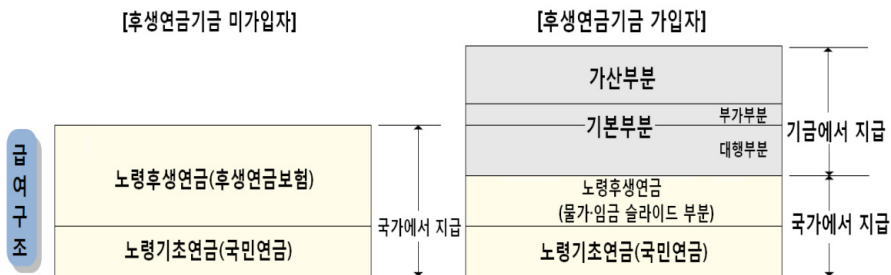


자료: 이상우 · 오병국(2012) 재인용.

하지만 이후 후생연금기금의 재정악화로 2002년 4월부터 대행부분을 다시 공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행반상이 허용되어 현재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후생연금기금의 급부는 기본적으로 노령후생연금의 기본부분과 가산부분(플러스 알파)에 근거하여 65세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국가에서는 노령후생연금보험 외에 대행부분과 가산부분에서 대하여 급부를 지급한다. 이 중 기본부분 중 대행부분은 후생연금보험과 함께 지급이 시작되나 가산부분은 기업의 정년연령 등에 감안하여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V-2〉 후생연금기금 급여지급구조



자료: 이상우 · 오병국(2012) 재인용.

② 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급부기업연금은 2002년 4월부터 확정급부기업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후생연금기금의 대행부분 외에 플러스 알파부분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은 규약형과 기금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에 따라 연금관리와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는데, 적립의무 및 급여지급에 대한 책임은 기금형의 경우 기금이, 규약형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다.

연금급여액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결정 시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최대 20년까지로 선택하여 설정한다. 기업이 급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기간을 20년까지로 설정할 경우 장수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급여방식을 일시금이 아닌 5년 이상의 연금형태로 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연금수급 5년이 지난 후에 일시금으로도 수급 가능하다.

③ 확정기여연금

확정기여연금은 가입자가 미리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자산을 스스로 운용·적립하여 퇴직 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용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가입자에게 있다. 확정기여연금의 가입자격은 근로자에게 한정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동 연금의 종류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기업형과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관리·운영하여 기업연금대상자가 아닌 자가 개인단위로 가입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개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형의 경우 기초연금 제2호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입한다. 약관이 정한 경우 근로자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적립금의 운용을 지시한다.

개인형의 경우 기초연금 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등 또는 기초연금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만 기업형 연금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업형과 달리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오직 근로자만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과세제도

가) 공적연금제도

① 납부 단계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는 전액 사회보험료로 취급되어 소득공제되며,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료를 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후생연금 기금에서 부담한 대행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근로자도 일부 부담이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공제가 아닌 생명보험료 공제에 해당하며 생명보험료 공제는 보장성보험, 건강·간병보험, 연금보험으로 구분되며 각각 한도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표 V-14〉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근로자 보험료 소득공제(2015년)

가입기간	연간보험료	공제액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2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의 전액
	20,000엔~4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 $\times 1/2 + 10,000$ 엔
	40,000엔~8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 $\times 1/4 + 20,000$ 엔
	80,000엔 이상	40,000엔
2011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25,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의 전액
	25,000엔~5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 $\times 1/2 + 12,500$ 엔
	50,000엔~100,000엔 이하	납입보험료 등 $\times 1/4 + 25,000$ 엔
	100,000엔 이상	50,000엔

주: 납입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잉여금과 반환금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일본 국세청.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며 근로자의 급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확정기여연금(기업형)인 경우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 월 27,500엔,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경우 월 55,000엔을 한도로 한다. 확정기여연금(개인형)인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등은 월 68,000엔,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 23,000엔을 한도로 한다.

② 운용 단계

사용자는 기업연금 운용 시 운용차익에 대하여 특별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특별법인세의 과세대상은 운용이익이 아닌 적립금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1%대 수준이다. 후생연금기금의 경우 적립금 중 대행부분의 3.23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173%의 특별법인세가 과세되며 많은 경우 과세한도에 미달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비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경우 적립금 중 근로자 납입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173%의 특별법인세를 과세하며 확정기여 연금의 경우 역시 적립금에 대하여 1.173%의 특별법인세를 과세한다.

사용자와 달리 근로자가 확정급부기업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운용이익이 발생한 경우 본인 출연분에 대한 적립금은 계산상 소득공제 된다.

③ 수령 단계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급여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구분하며 공적연금 등 관련된 잡소득은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잡소득은 ‘공적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으로 그 외의 잡소득과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소득에 해당한다. 잡소득이 되는 주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등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거의 근무에 의해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연금, 외국의 법령에 근거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제도로 위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 또는 공제 제도와 유사한 것 등으로 정의 된다.⁸⁴⁾ 공적연금을 수취한 피보험자는 수입금액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5.105%(2015년 기준)를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즉, 공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한다. 다만 확정급부기업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공적연금 등의 잡소득은 65세를 전후하여 달리 적용되며 공적연금 등의 수입 금액의 합계액에 수입 금액 수준별 비율을 곱한 후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84) 양인준 외(2014).

〈표 V-15〉 잡소득 금액의 계산(2015년 기준)

(단위: %)

연령	공적연금 등의 수입 금액의 합계액(A)	비율(B)	공제액(C)
65세 미만	700,000엔 이하	0	—
	700,000엔~1,300,000엔 미만	100	700,000엔
	1,300,000엔~4,100,000엔 미만	75	375,000엔
	4,100,000엔~7,700,000엔 이하	85	785,000엔
	7,700,000엔 이상	95	1,555,000엔
65세 이상	1,200,000엔 이하	0	—
	1,200,000엔~3,300,000엔 미만	100	1,200,000엔
	3,300,000엔~4,100,000엔 미만	75	375,000엔
	4,100,000엔~7,700,000엔 이하	85	785,000엔
	7,700,000엔 이상	95	1,555,000엔

주: 잡소득 금액 = $A \times B - C$

자료: 일본 국세청.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퇴직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되기 전의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후 1/2를 곱하여 퇴직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퇴직소득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표 V-16〉 퇴직소득 공제액(2015년 기준)

근속연수	퇴직소득 공제액
20년 이하	400,000엔×근속연수(800,000엔 미만인 경우에는 800,000만 엔)
20년 이상	8,000,000엔 + 700,000엔×(근속연수 - 20년)

자료: 일본 국세청.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부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된다.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연금법, 구 선원보험법,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법,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 구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법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비과세된다. 다만, 일부 연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하지 아니한다.⁸⁵⁾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다.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확정급부기업연금에 관련되는 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퇴직금 공제 단체가 실시하는 퇴직금 공제에 관한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일본 법인세법 부칙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적격 퇴직연금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과세된다.

사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연금수령자)와 보험료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보험료를 부담한 자가 연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공적연금 등 이외의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연금액에서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차감된 금액에 10.21%(2015년 기준)를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만약 보험료를 부담한 자와 연금을 수령한 자가 다른 경우 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적연금은 피보험자(연금 수령자) 및 보험료 부담자, 연금수급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피보험자와 보험료 부담자가 동일하고 연금수급권자가 다른 경우 이는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와 달리 피보험자와 보험료 부담자가 다르고 또 다른 유족이 연금수급권자인 경우 이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년 지급받은 연금은 처음 2년 동안 전액 비과세되며 2년 이후부터는 과세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연금액에서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차감된 액수에 10.21%(2015년 기준)를 곱하여 원천징수한다.

85) 양인준 외(2014).

4. 소결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매우 자주 바뀌고 그 체계 역시 매우 복잡해서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금세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공적연금, 준공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으로 3원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금세제의 납입기, 수령기 세제가 모두 상이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세제상의 특징을 숙지하고 본인에 맞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서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미국 등의 경우 연금세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금세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도구로서 계층별로 차별화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복잡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계층별 연금가입유인 측면에서의 장점보다는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연금상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층별로 필요한 세제를 제공하면서도 복잡성으로 인한 효용이 적은 부분은 단순화한 세제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체 저축의 총량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빈곤율과 연금자산의 연금화 수령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금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중·단기 저축을 연금수령을 위한 연금으로 저축하도록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노후빈곤율 개선 및 사회적 편익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적연금 기여금 납입 시 세제혜택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세제의 일관성이 저해되었으며 사적연금가입이 감소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 방식 도입으로 인해 EET의 일관성이 저해되었으며, 사적연금의 주요 대상이며,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유인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연금가입 및 납입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이루면서 제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⁸⁶⁾

마지막으로 소득계층에 특화된 연금세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근

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세제 혜택은 사적연금 가입동기를 유발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금세제 혜택은 영국, 미국, 일본처럼 특정계층을 타겟으로 하여 특화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⁸⁷⁾을 고려하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우자의 공적연금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Catch up plan과 같은 연금수요의 변화에 따른 제도 및 영국의 NEST와 Lifetime ISA 혹은 독일의 리스터 연금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과감하고 탄력적인 연금가입 유인 정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6) 정원석·강성호(2015a).

87)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VI. 결론

우리나라의 금융·보험세제 설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과세제도에 충실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과세 설계에 있어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과세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등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및 강화는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다루어 동일한 규모의 소득이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보험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및 세계의 금융상품은 빠르게 발전 및 복잡화되고 있는데 반해 과세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과세 논리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금융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주식에 직접투자 시에는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손실 시에도 과세가 발생하여 응능과세 원칙과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상장주식 과세제외로 인해 자본이익과 이자·배당소득 간의 손익 통산이 되지 않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과세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적용되었으나,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집합투자기구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공급되는 현재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해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집합투자 기구 등 복합 금융상품에서 과세제외됨으로 인해 투자 손실 발생 시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납세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상식과 배치되는 조세제도는 국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등 동 제도로 인한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금융선진국들은 대부분 주식매매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손익의 통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자본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식거래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장기적인 금융소득과세 개혁을 통해 주식거래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대부분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20%로 통일하여 금융세제를 단순화·합리화하였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보편적 원칙 실현과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금융세제 설계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손익 통산 그리고 주식거래세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거래세 폐지 그리고 금융세제 단순화를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는 금융세제 선진화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보험세제의 경우 국가 간 금융·보험과세의 특징을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 국가들은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에는 과세를 하지 않으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은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본의 경우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고려하여 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상속공제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금 상속에 대한 별도의 공제항목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배우자 등 상속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특수성 혹은 위험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사망보험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역시 사망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법상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연금세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해외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단, 세계적으로 납입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을 세액공제로 제공하는 나라는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액공제의 제도상 특징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EET보다는 부분적 EET 혹은 TET 제도로 변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도의 효과 측면에서 세액공제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적연금가입이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한 연금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유인을 증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로 확대되었는데, 정책시행 이후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추이를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후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큰 것으로 판단되나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한도는 영국,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경우처럼 세제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등 적립자산의 연금화 수령비율이 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의무화 도입은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나라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금융·보험세제의 도입 및 설계는 우리 금융이 변화하는 산업 및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2001), 「2001년 개정세법해설」.
- 국중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고용노동부(2011), 「퇴직연금 단일화 필요성 및 효과와 주요 해외사례 연구」, 용역 보고서.
- 김용민(2010), 「집합투자기구 세제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권 제3집(통권 제15권).
- 김종욱(2012), 「연금소득 과세제도 연구」, 경남대학교.
- 김진수(2004),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류건식(2011. 7),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 도입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문성훈 · 김수성(2015),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 보험경영연구회(2010), 『보험과 리스크관리』, 문영사.
- 손영철 · 서종균(2014), 「금융상품과 세법」, 삼일인포마인.
- 신보미 · 심태섭(2013), 「우리나라 보험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4호).
- 안중석 외(2007), 「우리나라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대한 연구」, 『세법연구』, 07-02, 한국조세연구원.
- 양승규(2005), 『보험법』, 삼지원.
- 양인준 외(2014), 「연금제도에 대한 유기적 과세체계 정립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 오 윤 · 문성훈(2015),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21-1.
- 윤석명 외(201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12-40, 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우 · 오병국(201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조사보고서 2012-2, 보험연구원.

- 이석호(2014), 「개인연금 가입 제고 방안: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금융포커스』, 23권 33호, 한국금융연구원.
- 장재형(2014), 「배당, 분배, 배분의 개념체제와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재정경제부(2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 전병목 외(2007),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해외사례 연구」, 한국조세연구.
- 정민아(2014), 「영국의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 61~67.
- 정원석·강성호(2015a),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월 제2호, 한국재정학회.
- _____ (2015b),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저축세제 검토 방향」,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조선규(2014), 「우리나라 사적연금 제도 개선 방안-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Issue & Trend』,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 홍범교(2012),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발표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범교·김진수(2010), 「자본이득과세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범교·이상엽(2013),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3-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범교 외(2012), 「주요국의 채권 자본이득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2-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_____ (2013a),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_____ (2013b), 「주요국의 연금세제」, 『세법연구』, 13-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HM Revenue & Customs(2014), Gains on UK life insurance policies.
- HM Treasury, Policy paper(2015), “Tax and tax credit rates and thresholds for 2015-16”.

IRS(2015), “Pension and Annuity Income”, Publication 575.

John Hancock Investments(2015), “2015 Tax reference”.

PENSIONS POLICY INSTITUTE(2014. 6), “The Pensions Primer: a guide to the UK pensions system”.

Saving-Invest(2015), “Traditional IRA versus Roth IRA—Contribution and Phase-out Income Limits”.

대한민국 국세청(<http://www.nts.go.kr>)

라이나생명 블로그(<http://blog.lina.co.kr/99>)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

영국(<https://www.gov.uk>)

영국 Nest(<http://www.nestpensions.org.uk>)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

일본 연금청(<https://www.nenkin.go.jp>)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
 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
 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운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상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56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정 원 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임 준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limjoon@kiri.or.kr)

김 유 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yumi_kim@kiri.or.kr)

조사보고서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 집합투자기부,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6년 5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40-4 94320

979-11-85691-02-2(세트)

정가 10,000원